건설경기동향조사조사지침서

2010. 1



목 차

I . 소사개요	
1. 조사목적 3	3
2. 법적근거 3	3
3. 조사연혁 3	3
4. 조사기간 /	1
5. 조사주기 /	1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5	5
가. 모집단	5
나. 규모별 건설경기동향조사 중 중소건설부문의 표본설계 5	5
7. 조사대상 7	7
8. 조사항목 8	3
9. 조사방법 {	3
10. 결과공표 8	3
11. 조사체계 8	3
12. 조사업무 흐름도 (9
Ⅱ. 현장조사	
1. 조사직원의 기본자세 13	3
2. 기업체 관리요령 13	3
가. 관리목적 ······· 1%	3
나. 조사모집단 및 조사대상 기업체 1%	3
다. 관리사항	4
라. 변동관리방법	6

3. 현장조사요령	17
가. 면접조사요령	17
나. 전자조사, 통신매체를 이용한 조사요령	18
다.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방법	19
4. 조사표 작성요령	21
가. 조사표 작성 및 회수시 유의사항	21
나.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23
다.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25
라. 항목별 분류기준	34
Ⅲ. 내용검토 및 입력	
1. 내용검토	
가. 조사표 검토	
나. 인터넷조사(CASI)기업체의 조사내용 검토 및 유의시	
2. 자료입력	
가. 입력에 관한 일반사항	
나. 직원용 입력 프로그램	
다. 응답자용 입력프로그램	104
<부 록>	
1. 조사항목 및 지침서 주요 개정내용	117
2. 조사대상기업체 변동보고서 양식	126
3. 주요 사례별 처리방법	127
4. 조사용어 해설	140
5. 조사표(견본)	142
6. 통계청 작성 통계현황	144
7. 통계작성 법적 근거 현황	145

조사개요

1. 조사목적	3
2. 법적근거	3
3. 조사연혁	3
4. 조사기간	4
5. 조사주기	4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5
가. 모집단	5
나. 규모별 건설경기동향조사 중 중소건설부문의 표본설계 …	5
7. 조사대상	7
8. 조사항목	8
9. 조사방법	8
10. 결과공표	8
11. 조사체계	8
12. 조사업무 흐름도	9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일반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및 기성액을 발주자 및 공사종류별로 조사하여 국내 건설활동의 단기동향을 파악하는 기본자료 및 관련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됨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국내 공사실적(건설기성액)을 공사종류별, 발주자별로 조사하여 건설경기동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2. 법적근거(부록참고)

- 통계법 제 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10116호 : 1976. 7. 26.)
- 비밀보호 규정
 - 제33조(비밀의 보호)
 -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 제39조(벌칙)
- 조사응답 의무 및 과태료 관련규정
 - 제25조(자료제출명령)
 - 제26조(실지조사)
 -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 제41조(과태료)
 - ·통계법 제 25조 제3항 및 제 26조 제2항 위반 : 100만원이하 과태료
 - ※ 세부내용 : 부록「5. 통계작성 법적 근거 현황」참고

3. 조사연혁

- 건설수주
 - 1975. 1월 ~ 1976. 6월까지 시험조사
 - 1976. 7. 26. 작성승인

- 1976. 7월분부터 본조사(도급 기성순위 상위 170개업체)
- 1991. 1월 ~ 1994. 12월분까지 기성순위 상위 200개업체 (대표도 약 55% 내외)
- 1995. 1월분부터 대표도 54% 수준이 유지되도록 매년 기업체수 조정
- 건설기성
 - 1997. 8월 ~ 1998. 2월까지 시험조사
 - 1998. 2월 3일 작성승인
 - 1998. 3월(1월분)부터 본조사
 - 기성총액 누계 50% 수준이 유지되도록 매년 기업체수 조정
- 규모별 건설경기동향조사 개발배경
 -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 진행과정에서 건설업분야도 대규모 업체와 중소건설 업체간의 건설활동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
 - 따라서 건설산업 전체의 건설경기 동향파악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규모 건설업체 위주의 월간 동향자료와는 별도로 중소건설업체의 건설경기를 파악할 필요성 대두

4. 조사기간

- 조사기준시점
 - 건설수주 : 최종 계약완료시점
 - 건설기성 : 건설업체의 해당월 실제 시공실적
- 조사대상기간 : 매월 1일 ~ 말일까지(1개월)
- 조사실시시간
 - 건설수주 : 익월 1일 ~ 18일 까지
 - 건설기성 : 익월 1일 ~ 22일 까지

5. 조사주기

- 조사주기 : 매월
- 작성주기: 매월, 분기, 연간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가. 모집단: 건설업조사 결과의 일반건설업체

나. 규모별 건설경기동향조사 중 중소기업 부문 표본설계

○ 표본들

- 최근년 기준 건설업조사 자료에서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대상 업체를 제외한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체(2008년 10,357개 업체)

○ 표본추출방법

- 층화
 - ·기성액을 특성변수로 한 응용절사법에 의해 신뢰수준 95%, 허용상대오차 10%를 적용하여 절사점을 기준으로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층화
 - · 표본층은 시·도별로 대표성을 고려하여 표본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기성액에 대한 누적평방을 균등화하는 방법으로 층 경계점을 산정
 - •기성액이 경계점 미만의 업체는 3층으로 하고, 그 외는 2층으로 함

○ 표본규모 결정

- 네이만배분법에 의한 층화추출법을 적용하되, 대규모업체가 표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응용절사법을 혼용함
- 응용절사법에 의해 신뢰수준 95%, 허용오차 10%를 적용하여 절사점을 기준으로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층화한 후 표본층은 시·도별로 네이만배분법으로 표본규모 산정 ① 전수층
 - 1) 110
 - ·기성액이 일정규모(절사점) 보다 초과되는 기업체
 - ② 표본층
 - ·기성액이 일정규모(절사점) 이하의 기업체
 - ·시·도별로 부차모집단을 설정한 후 기성액에 대한 누적평방을 균등화하는 방법으로 2개 층으로 나눈 다음 네이만배분법(Neyman allocation)을 적용하여 표본규모 계산
 - ·시·도별 층별로 최소표본수가 15개 이상이 되도록 함
 -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개의 업체가 최대 20개 이하의 업체를 대표하도록 함, 즉 업체(기성액)당 최대승수는 20 이하로 조정

- 표본추출
 - 전수층 : 모두 표본업체로 선정
 - 표본층
 - · 표본층 표본업체를 시·도별 층별로 기성액이 큰 순서대로 정렬시킨 후, 결정된 층별 표본규모만큼 계통추출에 의해 표본추출
- 총계추정
 - 시·도 총계추정

$$\widehat{X}_h = \sum_{j}^{cn_h} x_{hj} + \sum_{i=1}^{2} w_{hi} \cdot \sum_{j}^{sn_{hi}} x_{hij}$$
 단, $w_{hi} = \frac{sB_{N_{hi}}}{sB_{n_{hi}}}$ 또는 $w_{hi} = \frac{J_{N_{hi}}}{J_{n_{hi}}}$ 여기서, 참자 $c: 전수층$ 변수 $x: 특성치$ $x: 충수$ $h: 시·도$ $B: 기업체수$ $f: 충$ $f: 개별업체$ $f: 모집단$ $f: 표본$

- 전국 총계추정

$$\cdot \hat{X} = \sum_{h} (\hat{X}_{h})$$

- 표준오차
 - 시・도

・분산 :
$$Var(\hat{X}_h) = \sum_{i=1}^{2} Var(\hat{X}_{hi}) = \sum_{i=1}^{2} \left({}_{s}N_{hi} \cdot \left({}_{s}N_{hi} - {}_{s}n_{hi} \right) \cdot \frac{{}_{s}s_{hi}^{2}}{{}_{s}n_{hi}} \right)$$
 단, ${}_{s}s_{h}^{2} = \frac{1}{{}_{s}n_{hi} - 1} \left(\sum_{j}^{s_{hi}} x_{hij}^{2} - \frac{(\sum_{l}^{s_{hii}} x_{hij})^{2}}{{}_{s}n_{hi}} \right)$

$$\cdot$$
 표준오차 : $SE(\hat{X}_h) = \sqrt{Var(\hat{X}_h)}$

$$\cdot$$
 상대표준오차 : $RSE(\hat{X}_h) = \ \frac{SE(\hat{X}_h)}{\hat{X}_h} imes 100$

品

- 전국

· 분산 :
$$Var(\hat{X}) = \sum_h Var(\hat{X}_h)$$

$$\cdot$$
 표준오차 : $SE(\hat{X}_h) = \sqrt{Var(\hat{X}_h)}$

$$\cdot$$
 상대표준오차 : $RSE(\hat{X}_h) = \ \frac{SE(\hat{X}_h)}{\hat{X}_h} imes 100$

7. 조사대상

- 조사대상 : 건설업조사 결과 중 일반건설업체
 - 건설경기동향조사
 - ·건설수주 : 최근년 건설업조사 결과 기성액이 큰 순으로 총기성액의 54%정도 기업체
 - ·건설기성 : 최근년 건설업조사 결과 기성액이 큰 순으로 총기성액의 50%정도 기업체
 - 규모별 건설경기동향조사
 - ·대기업 : 전수조사
 - · 중소기업 : 최근년 건설업조사결과 기성액을 기준으로 3개층으로 층화 후 상위층 전수, 이하 업체는 표본조사
 - * 대기업/중소기업 분류기준 : 자본금 30억원 초과 여부(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1호 관련] 시행령 별표1)
- 조사단위 : 국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체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F 건설업』중 국내 건설공사에 한정 되며 해외 건설공사는 제외함

8. 조사항목

- 건설수주
 - 수주연월, 공사명, 공사종류세분류명, 발주자명, 발주자세분류명, 수주액(월별), 착공예정연월, 완공예정연월, 공사지역
- 건설기성
 - 전체기성액, 발주자별 기성액, 공사종류별 기성액
- 조사표(부록)

9.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 : 담당공무원 및 임시조사원
- 자료수집방법 : 응답자 면접조사 방법(응답자 직접기입 포함)을 주로 하되 통신 매체(전화, Fax, E-mail), 전자조사(CASI) 방법을 병행
 - · CASI : Computer Assisted Self-Interviewing CASI 주소 : http://icon.surve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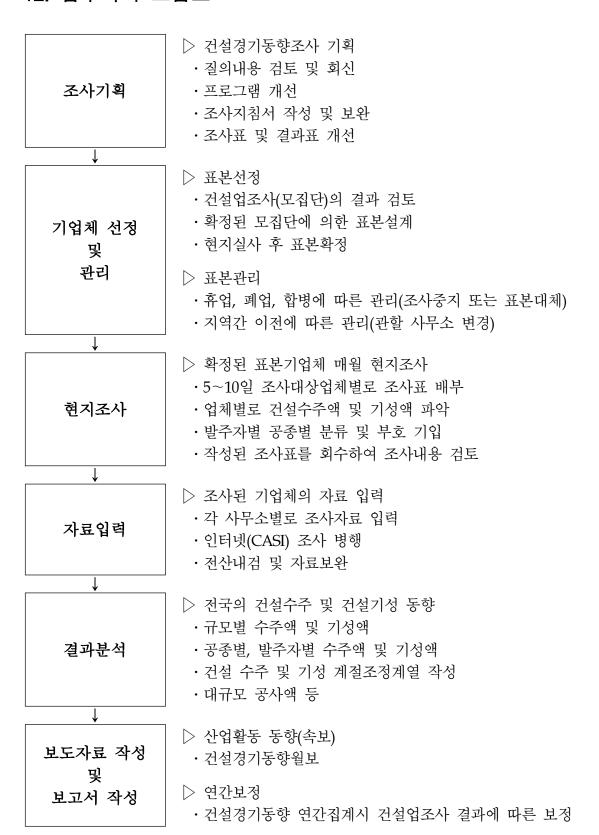
10. 결과공표

- 공표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브리핑
- 공표시기 : 매익월 말(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일)
- 간행물명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재
 - 보도자료 : 산업활동동향
 - 월보 : 건설경기동향(월보)/디지털 간행물(http://kosis.kr/ebook/)에 게재
 - 통계표 : 국가통계포털(KOSIS)

11. 조사체계



12. 업무처리 흐름도



Ⅱ 현 장 조 사

1. 조사직원의 기본자세 13
2. 기업체 관리요령 13
가. 관리목적
나. 조사모집단 및 조사대상 기업체
나. 관리사항
다. 변동관리방법
3. 현장조사요령 17
가. 면접조사요령 17
나. 전자조사, 통신매체를 이용한 조사요령 18
다.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방법 19
4. 조사표 작성요령 21
가. 조사표 작성 및 회수시 유의사항 21
나.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23
다.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25
라. 항목별 분류기준 34

현 징 조

Y

Ⅱ. 현장조사

1. 조사직원의 기본자세

- 조사지침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다.
 - 조사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즉시 팀장에게 질의하여 해결한다.
- 응답자와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조사누락 등 비표본 오차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응답자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다.

2. 기업체 관리요령

가. 관리목적

○ 조사대상 기업체의 변동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도 높은 통계 작성에 기여

나. 조사모집단 및 조사대상 기업체

- 매년 조사대상 기업체 선정
- 조사모집단 : 최근년 건설업조사결과 일반건설업체
- 조사대상 기업체
 - 조사모집단 기업체 중 자본금 30억 이상은 전수대상
 - 30억 미만은 기업체는 기성액에 의하여 층화후 1층 전수, 2·3층은 표본추출
- 최종 조사대상 기업체 확정
 - 조사 모집단의 확정 및 표본의 추출(표본관리과)이 끝난 후 지방청(사무소)에서 해당 기업체의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여 최종 표본 대상 기업체 확정



다. 관리사항

- 변동사항
 - 조사대상 기업체의 휴업, 폐업, 전출, 대상외, 소재불명, 이전, 합병 등
 - 기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응답자, 응답부서, 본사소재지, 대표자, 조사담당자 변경 등

○ 관리사항

- 기업체의 휴업, 폐업 등으로 기업체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수 대상기업체는 조사중지, 표본대상 기업체는 표본대체 후 산업동향과 보고
- 표본대체는 대체명부의 동일 시·도, 층 그룹 내에서 대체순서대로 대체함
- 기업체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해당 지방청 및 사무소에서 더이상 조사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출지역 지방청 및 사무소에 기업체 인계(유선 및 프로그램보완) 및 본청 보고
 - 이때, 기업체고유번호는 변경하지 않음
- ※ 표본기업체의 경우 시·도를 달리하여 전출하였을 시 대체함
- 기타 유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산업동향과에 보고 후 지시에 따름
- 단순변경사항의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에 기업체명부 보완 및 프로그램 보완

지방청코드 (사무소)	지방청 (사무소)	유고 년월	기업체 고유번호	기업체명	표본 구분	대표자	응답 구분	본사 코드	본사주소

응답지 주소	응답부서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조사 담당자ID	조사 담당자	입력 구분	기업체 유고코드	비고

1) 기업체고유번호

- 기업체고유번호는 산업동향과에서 부여한 번호로 변경지시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음
- 2) 기업체명
 - (주), (유)를 포함한 기업체의 공식명칭을 기입
- 3) 표본구분
 - 전수(A), 표본(S)으로 구분(산업동향과 부여)
- 4) 응답구분
 - 조사표 작성을 본사에서 하면 '1', 본사와 다른 곳에서 작성하면 '2'로 기입

조

人

- 5) 본사코드 및 본사주소
 - 본사는 면허등록지를 뜻함(세금납부지역_사업자등록증 내 등록지)
 - 기업체의 본사소재지와 해당 지역 코드를 기입

시도명	부호	시도명	부호	시도명	부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11 21 22 23 24 25	울산광역 도 역 도 명 기 도 당 청 청 청 청 청 청	26 31 32 33 34	전 전 라 남 당 당 남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35 36 37 38 39

- 6) 지방청(사무소), 조사담당자, 조사담당자 ID
 - 조사를 실시하는 지방청(사무소)명 및 코드, 조사담당자, ID를 기입
- 7) 입력구분
 - 조사자료를 조사담당자가 입력하는지, 기업체에서 직접 입력(CASI)하는지 구분
 - 지방청/사무소(1), 기업체(2)
- 8) 기업체 유고코드 및 유고연월
 - 기업체 유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동향과에 보고

기업체 변동부호

- ① 대체 ② 폐업 ③ 전입 ④ 전출 ⑤ 조사관할전입 ⑥ 조사관할전출 ◎ 변동없음
- ① 대체 : 기업체 유고가 발생하여 대체한 기업체
- ① 폐업 :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고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합병으로 타 기업체에 흡수된 경우
- ③ 전입, ④ 전출: 행정구역(11~39)을 달리하여 기업체(본사기준)가 이전하는 경우
- ⑤ 관할전입, ⑥ 관할전출 : 본사는 변동이 없으나 응답지(조사지역)가 바뀌거나 본사가 동일행정구역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기타 : 기업체명, 응답자명 등 기본사항이 바뀌는 경우

조사대상 기업체 확인

- ㅇ 매년 표본선정 및 연중 표본대체시 대상 기업체가 일반건설업체여부를 반드시 확인함
 - http://www.kiscon.net/(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내 건설업체검색)
 - 지자체 건설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업체변동내역을 입력하고 있으므로 수시 확인이 가능함
 - 수록내용 :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업종, 도급순위, 행정처분내역, 전화번호 등



라. 변동관리방법

- 전수대상 기업체
 -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유고 처리 후 조사중지
 - 조사대상 기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 해당 관할 지방청 및 사무소에 자료인계하여 조사계속
 - ·시도이전의 경우에는 전입, 전출처리
 - · 동일시도내 사무소간 이전의 경우에는 조사관할전입, 조사관할전출처리
 - 예) ① 광주광역시(24)에서 전남(36) 목포로 이전하였을 경우 전입, 전출 처리 □ 호남청(CA) : 전출(14) → 목포사무소(CB) : 전입(13)
 - ② 경기(31) 성남에서 경기(31) 고양으로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조사관할전입, 조사관할전출처리
 - ☞ 성남사무소(AD) : 조사관할전출(16) → 고양사무소(AH) : 조사관할전입(15)
- 표본층(2,3층)의 기업체
 -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유고 처리 후 표본대체
 - · 반드시 동일시 · 도, 동일층, 동일그룹내에 대체순위에 따라 대체함
 - 예) ① 대전광역시(25) 소재의 3층의 3그룹내 기업체가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전(25), 3층, 3그룹내에서 대체순위에 의하여 대체함
 - ☞ 충청청(EA) : 폐업(12) → 충청청(EA) : 대체(11)
 - ② 충남(33) 논산소재 3층 2그룹내의 기업체가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충남(33)소재 3층 2그룹내에서 대체순위에 의하여 표본을 대체함. 대체순위에 의하여 동일 지방청내 관할지역을 달리할 수 있음
 - ☞ 충청청(EA) : 폐업(12) → 서산사무소(ED) : 대체(11)대체1순위가 서산일 경우에는 서산으로 조사인계
 - 조사대상 기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
 - · 시도이전의 경우에는 대체
 - · 관할사무소는 변동이 없으나 시·도간 이전일 경우에도 대체
 - ·동일시도내 사무소간 이전의 경우에는 조사관할전입, 조사관할전출처리(조사계속)

조

人

- 예) ① 광주(24)소재 3층 1그룹내의 기업체가 전남(36)목포로 전출을 갔을 경우 시·도이전이므로 표본대체하여야 함. 이때도 광주(24), 3층 1그룹내의 대체 순위에 의하여 대체
 - ② 호남지방청(CA)관할 광주(24)소재 3층 2그룹내의 기업체가 동일지청(CA)관할인 전남(36) 나주로 이전하였을 경우 시·도간 이전이므로 광주소재 3층 2그룹 내에서 대체순위에 의하여 표본을 대체함
 - ③ 경기도(31) 성남에서 경기도(31) 고양으로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조사관할전입, 조사관할전출처리(조사계속유지)
- 본사는 변동없이 응답지역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 및 사무소에 업무인계하여(조사관할전입, 조사관할전출처리) 조사계속 유지함

3. 현장조사요령

가. 면접조사요령

- 현장조사 직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이상 면접조사를 목적으로 조사대상처를 방문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직원은 CASI(이하 "전자조사"라 한다) 또는 팩스·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전화를 이용한 조사(이하 "통신매체조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에 1회이상 조사대상처를 방문하여 면접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 사전에 조사표, 질문내용 등을 미리 준비하여 면접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미리 응답자와 연락을 하여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조사 한다.
- 기업체를 방문조사 할 때는 방문 목적과 내용을 먼저 간단히 설명한다.
 - 특히 조사결과는 집계자료로만 이용되며, 조사내용은 법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세금, 건강보험료 부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이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통계법 제13조)



- 직접 면담에 의해 조사표를 작성할 경우 항목간의 연관성 및 전월, 전년동월과의 대비 등에 유념해야 함. 타 업체의 조사표를 휴대 방문하였을 경우 타 업체의 실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방문시부터 조사가 끝날때까지 친절하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응답자로 하여금 사실대로 답변할 수 있는 친숙한 분위기를 조성한다.(피의자 심문 하듯이 질문하는 태도 절대 금지)
- 기업체 응답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실시함
- 조사이외의 불필요한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한다.
- 자계식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항목별 작성요령을 자세히 설명한 후 조사표를 배부하고, 반드시 약속된 날짜에 재방문 하여 조사표를 회수한다.
- 기타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응답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에 방문일시 및 재방문일시를 기입하고 약속한 날에 다시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나. 전자조사, 통신매체를 이용한 조사요령

- 현장조사 직원은 응답자의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전자조사 대상처 확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직원이 전자조사 대상처를 확대하고자 할 때 전자조사 대상처를 선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전자조사를 희망하는 조사대상처
 -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면접조사가 어려운 조사대상처
 - 조사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전자조사가 가능한 조사대상처
- 현장조사 직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통신매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응답자의 부재 등으로 면접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응답자가 통신매체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 조사대상처가 원거리(60km이상)에 위치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조사과장이나 지방소장이 통신매체조사를 허용하는 경우
- 현장조사 직원은 통신매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조사표에 통신매체의 종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방법

1) 지방통계청

- 지방통계청장은 현장조사 직원의 통계조사 협조요청이나 설득 등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처가 면접거부나 응답기피 등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이하 "불응대상처"라 한다) 아래의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조사팀장 또는 설득경험이 많거나 설득에 소질이 있는 다른 직원 등이 불응 발생시점 3주 내에 최소 3회 이상 출장 설득한다.
 - 지방통계청장 명의 조사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불응대상처가 조사에 응하도록 유도 (자료제출의무, 성실응답의무, 과태료 등 관련규정 참조)
 - 조사담당자, 팀장, 과장, 사무소장, 지방청장은 불응대상처의 사안별로 대처한다.
- 지방통계청장은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불응대상처가 발생하는 경우 본청 산업동향과에 통보한다.

2) 산업동향과

- 지방통계청의 통계조사 협조요청이나 설득 등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설경기동향조사 담당자가 직접 불응대상처를 지방청 조사담당자와 방문하여 지원 설득하다.
- 산업동향과 조사협조 문서 최종 발송
- 불응대상처 관리기준에 따른 자료대체 방안 검토 및 적용



3) 불응대상처 관리 기준

- 불응대상처 관리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기업체와 과태료 부과 제외 기업체로 분류하여 처리
 - 과태료 부과 대상 기업체
 - :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문서로 통지하고 계속 불응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름
 - 과태료 부과 제외 기업체(화의신청·법정관리 등 경영난, 기준미달 영세 기업체 등)
 - : 지방통계청(사무소) 자체 설득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조사응답 유도
- 전수·전수층 조사 대상기업체 : 계속조사
- 표본층 조사 대상기업체 : 표본대체

※ 불응대상처 과태료 부과처리 절차

- ① 불응설득 근거자료 정비
- 지방통계청(사무소)의 설득 활동 근거자료
- 불응설득을 위한 출장 수행내역
- 조사협조 자료요청 시행문서 및 기업체 문서접수 기록
- ② 통계법 제10조(자료제출명령)에 의거 자료제출 협조문서 시행
- 명시해야 할 사항
- 통계조사의 명칭 및 국가통계 승인번호
-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자료제출 요구사유
- 제출할 자료의 내용
- 자료제출의 기한 및 장소
- ③ 과태료 부과처분의 사전 절차
- 통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 조회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견조회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피처분자가 과태료 처분예정에 대한 의견을 서면 진술토록 함
- 의견조회시 과태료 금액과 서면 진술 기한을 정함
-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은 별표에 의함

Ö

징

조

人

П

- 송부 • 과태료 납입고지서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이의신청 기간은 10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정함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피처분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

- 과태료 부과처분 시에는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지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⑤ 피처분자의 이의 제기시 과날 법원에 통보
- 피처분자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함
-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함
- ⑥ 과태료 징수

④ 과태료 처분 통지

- 과태료의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 관리
-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

4. 조사표 작성요령

가. 조사표 작성 및 회수시 유의사항

- 조사기준인 연, 월이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업체고유번호의 누락 및 해당기업체의 기업체고유번호와의 일치여부를 검토함
- 조사표는 흑색 또는 청색 펜을 사용하여 각 난에 맞도록 깨끗이 기입함
- ㅇ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함
- ㅇ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이며 백만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기입함



- 오기된 내용을 정정코자 할 때에는 오기된 곳에 두 줄의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정정내용을 기입함
- 도급공사와 직영공사,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수주업무와 기성공사의 관장부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모두 방문하여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함
- 수주계약 당시에 발주자공급 원자재의 유무를 확인하고, 발주자공급 원자재가 있을 경우 금액을 확인하여 수주액에 포함하여 기입함
-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 발주한 경우에는 원 발주자(실수요처)가 별도로 있는데도 발주자명을 "조달청"으로 잘못 기입되었는지 검토함
- 각 항목에서 전년동월 및 전월과 현저한 차이(30% 이상)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상세히 기입함
- 해당되는 공사의 건수가 많아 조사표 기입란이 부족할 경우 (을)지를 사용하여 이어서 작성하고, 그 매수를 기입함(조사표 상단 우측)
- 이미 최종계약된 공사의 증·감액, 취소 등 변경내역이 있는 지를 추가 확인하여 변경내역을 조사표에 기입함
- 타건설사로 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가 조사대상기업체의 수주 또는 기성실적에 착오조사되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함
- 기업체에서 기입한 조사표를 회수할 때에는 즉석에서 다음사항을 검토함
 - 공사명 및 발주자명이 한글(필요한 경우, 한자나 영문자 병기)로 정확히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수주액, 착·완공예정년월, 공사지역의 누락여부 및 항목간 합리성을 확인함
 - 해당부서의 취합자료만 기입되어 조사대상기업체의 당월 수주 및 기성실적에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징

조

人

나.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1) 건설업과 유사업종의 산업분류 비교

- 건설업/제조업 │ 건설업 : 수주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자재, 용품만을 한정적으로 직접 가공ㆍ제작하여 당해 건설활동을 수행
 - 제조업 : 직접 건설수주, 시공 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의 주문에 의해 건설자재를 제조하여 주문업체에 납품
- 도·소매업
- 구입한 상품을 변경(가공)하지 않고 다른 도·소매업자, 단체, 대량 구매자, 개인, 가정, 소비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 건설업 / 부동산업
- 건설업 : 자사계정에 의해 자사가 직접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
- ㅇ 부동산업
 - 자사계정에 의해 자사가 직접 건물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 다른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경우
- 건설업 / 기계장비임대업
- 건설업 :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설장비를 임대(운전자포함)한 경우
- 기계장비임대업 : 다른 건설업체 등에 일정의 임대료를 받고 계약기간 동안 건설장비를 임대(운전자제외)하고 임차사업체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
- 건설관련기술 서비스업
- 건설시공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건설관련 기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 측량업, 건축설계, 감리, 도안작성 및 기타 관련기술서비스
 -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 『토목건설 관련설계 및 공학서비스를 수행 하면서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자에 의뢰하여 약정된 건설공사를 완성시켜 주는 Turnkey Base(일괄도급 포함)』
 -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 기계 및 기타 산업기술관련서비스
 - 지질조사 및 탐사업

2) 일반건설업 등록업종별 업무내용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산업환경설비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 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3) 건설기성액 부문

○ 개념

ㅇ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부가 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

> 주의사항

- 기성조사에서의 기성실적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도급기성을 기준으로 하며, 도급기성이 계산되지 않는 직영공사의 경우 실행 기성을 조사함

○ 실행기성

○ 실제 시공에 소요된 공사원가로 재료비, 노무비, 현장경비 등을 포함

○ 도급기성

ㅇ 계약공사의 경우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금액

- 도급기성은 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발주자에게 관기성을 신청

○ 관기성

○ 건설업체가 공사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

○ 하도기성

○ 하도급업자에 대한 공사결제대금

> 주의사항

- 하도기성은 하도급업자의 입장에서는 도급기성이 되며, 원도급업자의 입장에서는 실행기성의 일부임

조

人

다.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기업체 현황

<기입예시>

	기업체명				통계건설(주)							조사
소재지(주소) 대전 서구 둔산동 920번지								방법				
기업체고유번호									9			
9	9	9	_	9	9	_	9	9	9	9	9	S

- 기업체명
- 조사기업체의 정식명칭을 기입
- 소재지(주소)
- 조사대상 기업체의 실제 소재지 주소를 기입
- > 주의사항
- ▷ 본사와 응답지가 다를 경우 응답지역의 주소를 기입
 - 본사의 경우에는 기업체명부에서 별도로 관리
- 기업체고유번호
- 산업동향과에서 제공하는 기업체고유번호를 기입
- > 주의사항
- ▷ 본청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임의로 변경불가
-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조사표작성 및 회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_	구분	면접	전화	FAX	우편(E-mail)	CASI
	부호	1	2	3	4	5

나) 비고사항 및 응답자, 조사담당자

<기입예시>

○ 비고(전년	년동월,	전월대비	기성실적이	30%이상	증감한	경우	현장변동	등	주요사유	기입)
---------	------	------	-------	-------	-----	----	------	---	------	-----

	응답자	조사담당자
・부 서		
· 성 명		
· 전 화	() –	() –
\cdot F A X	() –	() –
• E-mail		

- 비고란
- 비고란은 전년동월, 전월과 당월 사이의 증감률 변동이 큰 이유 및 기타 사항은 참고란에 기입함
- > 주의사항
- ▶ 발주자별 금액과 합계금액이 일치하는 지 검토함
- ▷ 항목별 금액과 합계금액이 일치한지를 확인함
- ▶ 발주자별 분류와 공종별 분류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함
- 응답자
- 조사기업체의 응답자의 부서와 응답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함
- > 주의사항
- ▷ 조사표상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입함
- ▷ 응답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여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 착오사례
- ♣ 후임응답자가 업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해당 기업체의 과거 3개월 수주내역을 모두 기입하여 중복조사 된 사례가 있음
 - 건설수주는 매월 조사로 해당월의 수주내역만 조사하게 되어 있음
- 조사담당자
- 조사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함
 - 조사방법이 응답자 직접기입 조사표의 경우 반드시 조사담당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응답자가 조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수주

가) 공사명 및 공종 세분류명

<기입예시>

공 사 명		공사종류 세분류명 분류부호	
강원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척도이석공사	2	척도궤도 0	5
아파트 신축공사(증액)	1	신규주택 <i>1</i>	1
전남 국도대체우리도로 종학-둔석간 건석공사(감액)	_	5 見 心 は	<u>-</u>
	2	0	3

○ 공사명

> 주의사항

- 공종분류의 정확성을 위해서 조사시 응답업체에서 정확한 공사명을 파악하여 조사표에 기입
- ▷ 공사명이 길다고 줄여서 기입하지 말 것(공사지역을 <u>반드시</u> 포함, 상세히 기입할 것)
- 계약의 변경에 따른 수주의 증감이 있을 경우 공사명에 증액, 감액여부를 기재
- ▷ 감액의 경우 조사표 입력후 해당 수주의 처음 수주시점을 확인하여 전산내검사항에 입력
 - 입력사항: 최초수주연월
- 방위와 관련된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로 기입
 - 안보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 방위와 관련된 공사명은 "xx공사"라고만 기입
 - 발주자가 군부대일지라도 방위와 관계없는 공사는 공사명을 구체적으로 기입
- ㅇ 응답기업체에서 공종을 분류했어도 지침서의 공종분류를 참고하여 재확인
- 분류 가능한 공종으로 분류한 후 해당 공종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
- ㅇ 공사명을 확인한 후 공사명에 따라 조사표 하단의 공종 세분류명을 기입

○ 공사종류 세분류명

▶ 주의사항

- 분류부호
- > 주의사항
- ♣ 사례

- ▶ 하위분류가 있을 경우에는 하위분류명을 기입예) 주택재개발공사의 경우 재개발주택으로 기입
- 공종분류 부호는 조사표 하단의 공종 세분류명에 따라 부호를 기입
- ▷ 『공사종류별 분류기준』의 분류기준항목 설명을 참고하여 분류
- 문1) 도로변 가로등, 신호등 설치의 경우 공종분류방법은?
- 답) ▷ 도로공사의 연속인 경우에는 도로(203)로 분류 ▷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발전 등(207)으로 분류
- 문2) 고속도로 휴게소 공사의 경우
- 답)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등과 같이 기타건축(109)으로 처리
- 문3) 자전거도로 설치의 경우
- 답) 현재 인도설치의 경우에도 도로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도로(203)로 분류

참고-1 공사종류 분류방법

- 토건(토목, 건축)공사의 경우, 분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분이 곤란한 경우, 수주액의 비중이 큰 공종으로 분류
- 건축물의 용도가 다용도일 경우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주로 사용되는 공종으로 분류함
 - ⇒ 주상복합건물, 역사+상가, 발전시설+사무실

나) 발주자명 및 발주자 세분류명

<기입예시>

발 주 자 명	발주자 세분류명						
宣 ナ 小 る	*분류부호						
みりつきに ひょし	공기업						
한국척도공사	1 0 3 0						
rużt E コノス FH フィレ	공기업						
대창토지주택공사	1 0 3 0						
여수시	지방자체단체						
474	1 0 2 0						

- 발주자개념
- ㅇ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함
- 도급개념
-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발주자명
- 발주자명은 계약서상에 나타난 정식명칭을 기입
-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 발주한 경우에는 원 발주처(실수요처)를 발주자로 기입함
- > 주의사항
- ▶ 발주자명을 약칭으로 기입하거나, 발주자 분류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잘못된 사례		 잘된 사례
시설공단		고속시설공단
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컨테이너공단	\Rightarrow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서울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

- 민자공사의 경우 민자공사를 위해 설립한 새로운 법인명을 기재
- 응답기업체에서 발주자를 분류했어도 지침서의 발주자분류를 참고하여 재확인
- 발주자종류 세분류명
- 발주자세분류명은 조사표 하단을 참조하여 세분류 부호를 기입
- 분류부호
- 발주자분류 부호는 조사표 하단의 발주자 세분류명에 따라 부호를 기입
- > 주의사항
- ▷ 『발주자별 분류기준』의 분류기준항목 설명을 참고하여 분류
- ♣ 사례
- 문1) 농협의 발주자 분류방법?
- 답) ▷ 농협의 소속 및 공사종류에 따라 발주자분류가 달라짐
 - 소속에 따른 분류
 - ·단위농협 : 공사종류 관계없이 '금융서비스(2220)'로 분류
 - · 중앙농협 : 공사종류에 따라 2가지 형태로 분류
 - → 공사종류 : 경제사업, 교육사업부분 : '기타공공단체(1090)'

금융사업: '금융서비스(2220)'로 분류

- 문2) 공기업의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처리시점?
- 답)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변경시 변동함을 원칙으로 함. 지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산업동향과에서 지침서와는 별도로 자료제공예정

참고-2 민자유치사업

- 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민간업체가 시행주체가 되어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분류방법은 사업의 기본 용도(운수, 교육 등)에 따른 민간의 발주자 분류체계를 따르되, 편의상 발주자 분류코드 네 번째 칸에 '0' 대신 '1'을 입력함

공 사 명	공사종류 세분류명	발주자명	발주자 세분류명		
○ ^F 6	* 분 류 부	ヨ 下小で	*분류부호		
부산신항안건석공사(먼자)	*************************************	부사사장망(주)	운수업 2 2 1 1		

* 발주자 분류부호 2211=221(기존 운수업 분류부호)+1(민자사업표시)

다) 건설수주액, 계약변경, 공사기간(착공, 완공예정), 공사지역

< 기입예시>

건 설 수 주 액			착공	년	완공	년	공사지역		
(백만	원)			예정	월	예정	월	*지역부호
	2	4	5	9		2010 년		201 3 년	강원
	L	4	J	7		5 월		10 월	3 2
		1	4	Q		2010 년		2011 년	경기
		/	4	7		4 월		11 월	3 1
			1	1		<i>2010</i> 년		<i>2010</i> 년	전남
		_	/	1		# 월		<i>12</i> 월	3 6

○ 건설수주액

▶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임
- 본 조사의 수주액은 공사계약금액 뿐만 아니라 매출부가가치세액(10%)과 발주자 공급원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토지보상비는 제외)
- 최종계약일을 기준으로 조사함

> 주의사항

- ▷ 응찰중에 있거나 설계작성 중 또는 계약체결전 일부 착공한 경우에는 수주한 것이 아니며 낙찰되었지만 아직 계약체결이 안된 경우도 포함되지 않음- 낙찰일인지 계약일인지를 반드시 확인함
- 직영공사의 경우에는 직영공사 계획 확정시(착공시 또는 결재권자의 결재 완료 시점) 토지가격을 제외한 총공사비를 조사함
-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도급한 공사(컨소시엄공사)는 조사 대상기업체의 지분만 수주금액으로 조사함
-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공사자재를 공급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조사시 관급자재비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여 수주액에 포함하여 조사함
- 장기계속공사(건설공사가 1년을 초과하는 공사)는 연간부기금액(연차 계약분)이 아닌 총액부기금액(계약총액)을 조사함

▶ 주의사항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모든 공사기간의 총공사금액을 계약한 후 일반 적으로 연도별로 재차 차수계약을 함에 따라 차수계약분을 중복하여 수주로 조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신규계약분인지, 연도별 차수계약분인지 확인하여 차수 계약분은 제외하고 조사

● 계약변경

- 이미 발주한 공사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증액은 당월 조사대상기간에 반영하고, 감액은 연간보정시 처음 수주시점의 자료를 보정함
- ▶ 주의사항
- ▶ 변경계약(증액,감액)된 수주금액을 조사할 때는 변경계약한 전체금액이 아니라 증감된 금액만을 조사해야 함

Y

- ▷ 변경시점에 공사명 끝에 증액 또는 감액으로 표시한 후 조사표에 기입
 - 증액: 증액된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
 - 감액: 감액된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연간보정을 위하여 감액된 수주의 최초 수주연월과 공사명을 확인하여 관련자료를 내검 사항(전산내검프로그램)에 기록
- 공사기간
- 착공예정월, 완공예정월은 향후 건설투자규모를 예측하는 데에 이용됨에
 따라 정확하게 조사함
- 총 공사기간을 기입하며 공구별(도로, 철도 등)로 수주한 경우는 공구별 공사기간을 기입함
- 공사지역 공사지역부호
- 공사지역명은 해당 시·도명을 기입하고, 공사지역 부호는 해당 시·도 부호 두 자리를 기입함
 - 공사지역은 건축물 혹은 도로, 댐과 같은 시설물의 공사가 진행될 지역을 말하며, 도로·교량과 같이 시·도 경계에 중첩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공사구간(공사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구분함

시도명	부호	시도명	부호	시도명	부호
서울특별시	11	울산광역시	26	전 라 북 도	35
부산광역시	21	경 기 도	31	전 라 남 도	36
대구광역시	22	강 원 도	32	경 상 북 도	37
인천광역시	23	충 청 북 도	33	경 상 남 도	38
광주광역시	24	충 청 남 도	34	제 주 도	39
대전광역시	25				

♣ 사례

- 문1) 정확한 수주시점은?
- 답) 건설수주의 시점은 최종계약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함보통 우선협상대상선정, 또는 낙찰시점에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수주의 취소가 발생할 경우가 상당함으로 반드시 최종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함. 특히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할 것
- 문2) 당월에 수주하여 당월에 끝나는 경우 공사기간의 조사?
- 답) 당월 수주, 당월종료로 조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연계 검토하여 공사기간의 부정확 감소
- 문3) 발주자가 자재를 공급할 경우 조사방법은?
- 답) 수주액에 발주자 제공 자재비용도 포함하여 조사함



3) 건설기성

가) 발주자별 건설 기성액

<기입예시>

발 주 자 분류부호			기 성 액	(백 만 원)	발주자분류기준
包	T ^r	분류부호	전 월	당 월	일무시단표기단
_	공 공	101	5 0 5	5 1 0	
민	직영공사	201			
간	도급공사	202			
ī	민 자	301	2 0 0 0	2 1 0 0	
9	외국기관	401			
7	합 계		2 5 0 5	2 6 1 0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

- 건설기성조사는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건설업체가 평가한 공사실적을 조사함을 원칙으로 함
- 부가가치가 포함된 도급기성을 기준으로 하며, 도급기성이 계산되지 않는
 직영공사의 경우 실행기성을 조사하다.
 -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기성실적이 부가가치를 포함하지만, 직영공사의 경우에는 기성실적이 공사원가만으로 계산됨

기성실적산출방법

- 전체공정률 기준방법
 - 공정률 × 계약액
 - 공정률 계산방법 : 집행예산/계획예산 or ∑(공정별진척도×공정별 가중치)
- ㅇ 실적물량 기준방법
 - Σ (실제투입물량 × 계약단가)
- 집행예산 기준방법
 - 실제 시공에 소요된 공사비용으로 직영공사의 경우 적용함
- 각 발주부문에서 발주한 공사 중 당월 공사한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당월 기성액란에 기입함

> 주의사항

▶ 관급자재가 포함된 경우 관급자재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함

- 당월의 기성실적을 조사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함
 - 기성실적이 누계로 집계되는 경우 당월 누계액에서 전월 누계액을 차감하 여 당월의 기성실적을 구하여 기입
- 전체공정률에 따라 기성실적을 구하는 경우, 가급적 전체공정률을 공정별 진척도에 따라 구하고, 기성실적도 그에 따라 조사함

조

Y

> 주의사항

- ▶ 실제 기성실적이 집계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기성액을 응답하는 업체는 기성조사의 취지를 잘 설명하여 매월 실제 기성실적이 집계될 수 있도록 설득
-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일치한지를 확인함

나) 공종별 건설 기성액

<기입예시>

ュ	공 사 종 류 분류부호		기 성 약				액(백만원)						공종분류기준
0	ी है म	モガナユ	전	,	월			당	•	J	월		० उस्म/स
건 축	주 거 용	101											
축	비주거용	102	2	0	0	0			2	1	0	0	
	일반토목	201		5	0	5				5	1	0	
토	전기기계	202											
목	플 랜 트	203											
	조경공사	204											
ह्य	- 계		2	5	0	5			2	6	1	0	
	잠・확정	구분]잠정	V	확진	प्रे ठ	V]삼	정		확7	정	

- 공종별건설기성액
- > 주의사항
- 각 발주부분 당월 기성액을 공사종류별로 분류하여 집계한 후 각 공종별 해당란에 기입함
 - ▶ 발주자별 금액과 총액이 일치하는 지 검토함
 - ▷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일치한지를 확인함
 - ▶ 발주자별 분류와 공종별 분류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함
 - 예) 공공기관 발주의 경우 플랜트가 흔하지 않음
 - ▷ 건설수주와 연계하여 일치여부를 검토함
- 잠·확정구분
- > 주의사항
- ♣ 사례
- ㅇ 공사실적의 잠확정을 확인하여 구분함
 - ▷ 전월 실적의 경우 반드시 확정치를 조사함
- 문1) 전월 확정처리 하였는데 금월조사시 전월자료의 수정이 가능한지?
- 답) 수정가능
- 문2) 수주액 조사시 공사완료시점보다 늦게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기성조사 방법은?
- 답) 기성조사는 실제 이루어지는 실적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실제 공사가 늦 어졌다면 실제대로 조사함



라. 항목별 분류기준

1) 공종별 분류

가) 공종별 분류 항목표

○ 건설수주

부호	공종별	부호	공종별
中立 10 101 111 121 131 102 103 104 109	강종별	中文 2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9	공통별 ○ 토목 - 치산·치수 - 농림·수산 - 도로·교량 - 항만·공항 - 철도·궤도 - 상·하수도 - 발전·송전, 옥외 전기·통신 - 토지조성 - 댐 - 기계설치 - 조경공사 - 기타토목

○ 건설기성

부호	공종별	부호	공종별
10 101	건축주거용건물주택	20 201	토목일반토목수주의 토목 중 아래
102	- 비주거용 건물 · 건축물 중 주택 제외	202	3가지 공종 제외 - 전기기계 · 발전·송전, 옥외 전기·통신(207)
		203	- 플랜트 •기계설치(210) - 조경공사(211)

현 징 조

人

나) 분류 항목별 해설

(1) 건축

- 건축이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 건물의 증·개축인 경우 주 건축물의 용도로 분류하며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분류
- ☞ 주택의 리모델링인 경우 '신규주택(111)'으로 분류하며, 사무실의 리모델링인 경우 '사무실(102)'로 분류

용 어 정 의

- 리모델링: 오래된 주택 또는 기타 건물을 새로 개수(改修)하거나 보수(補修)하는 건축 행위
- 리모델링의 공종분류시 유의사항
- · 리모델링을 단순한 건물의 설비공사로 해석하여 부속설비공사(전기, 통신, 냉난방, 가스, 승강기 등)로 분류하지 않도록 유의
- 리모델링의 장점
- ㆍ 자원 낭비를 줄이고 건물 수명과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 ·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의 우려가 없고 공사기간이 짧다.
- · 과거 신축 당시의 법규와 규제를 그대로 작용할 수 있어 재건축과 달리 불이익이 적다.

(가) 주택(주거용 건축물) (101)

- 단독 및 연립주택, 아파트(군인아파트 포함), 기숙사, 주상복합건물(상업용과 주거용 혼합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용 면적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분류한다), 다세대주택, 공관 등
- ☞ 건물의 증축, 개축인 경우 주 건축물의 용도로 분류한다.

- 주택분류시 반드시 <u>아래 3개 하위분류(신규주택, 재건축, 재개발)</u>로 구분하여 조사표에 기재
- 신규주택(111) 재건축/재개발이외의 주택 및 기존주택의 증·개축 등
- 재건축주택(1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재개발주택(13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 정비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역 및 그밖의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공급시설 등

(나) 사무실, 점포, 숙박시설, 오락장, 시장 (102)

-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 농수산물 시장, 청과물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등
- ㅇ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 금융기관, 사무소, 신문사 등 업무용 시설, 오피스텔 및 유사건물, 중앙통제가 가능한 최첨단 건축물
- ㅇ 호텔, 숙박시설
-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 ㅇ 공연, 집회장소
 - 극장(야외극장 제외), 영화관, 연예당, 음악당, 서커스장, 회의장, 예식장 등의 시설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
- 0 위락시설
- 야외음악당, 유흥업소, 카지노, 목욕탕 등
- 0 기타
- 근린생활시설(주거용50%미만), 음식점, 주점, 점포, 고시원, 미용실 등
 - ☞ 건물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면 102(사무실, 점포, 숙박시설, 오락장)로 분류

人

(다) 공장·창고 (103)

- ㅇ 공장, 작업장용 건물
-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수리를 위한 공장 건축물
- o 변·발전소용 건물
- 변전소, 발전소 등의 전력공급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
- ㅇ 창고
- 창고 및 하역장 용도의 건물(위험시설물 제외)
- 기계·기구 설치를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 물류창고, 영업창고, 농수산물 창고 등
- ☞ 공장내 각종 건물은 주건물인 공장으로 분류하나, 주택, 기숙사, 병원, 운동장, 연구소 등은 공사건별로 해당 공종에 따라 분류

(라) 학교·병원, 관공서, 연구소 (104)

- ㅇ 관공서 건물
 - 일반공공시설 : 동사무소, 파출소,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도서관, 연수원, 마을회관 등
- 군사시설과 관련한 건축물
- 교정시설(구치소, 소년원 등)과 관련 시설물
- 0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원, 연수원, 연구소, 교육원시설 및 부대되는 공사(화장실, 실습실 등)
- □ 학교내의 제건물(강당, 화장실 등)은 주건물인 학교로 분류하나 운동장, 경기장은 『기타건축(109)』으로 분류
- 0 병원
- 병의원, 한방병원, 요양소, 정신병원 등 의료시설,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
- ㅇ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각종 전시시설
 - ◈ 전시시설의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판단, 공공목적은 (104)로 상업목적은 (102)로 분류
 - ◈ 공공 과학관 및 전시관은 (104)로, 상업용 박람회장 및 전시장은 (102)로 분류 (예 : 무역전시관)

- 노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 실버타운 등 영구적 용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자, 사회, 근로복지시설 등

(마) 기타건축 (109)

- 문화재 및 유적건물
- 전통양식(한식)의 건축물 및 시설물, 문화재, 기타유적건물
 - ◈ 사람이 거주하는 고택 및 생가의 보수는 신규주택(111)으로 조사
- ㅇ 종교용 건물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등
- 이 위험물 저장소 및 특정용 창고
- 주유소, 가스충전소, 유류판매소, 유독물판매소 등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탄약창고, 위험물 창고 등
- ◈ 군사시설의 탄약창고는 군사시설과 관련한 건축물로 보아 '관공서 등(104)'에 포함하여 조사
- ㅇ 동식물 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 등
- 묘지 및 장례시설
- 화장장, 납골당, 장례관련 건축물
- ㅇ 차고 및 터미널 건물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건축물, 항만시설건축물, 고속도로 휴게소
- 자동차관련시설: 터미널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차고 등
- 0 기타
 - 야영장, 자연학습관,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경기장, 운동장, 경마장, 체육관, 등대, 탑, 동물원용 건물 등
 - □ 건축물 주차장의 경우에도 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분류함이 타당, 주차타워 처럼 주차의 기능만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타건축(109)'으로 분류하고, 시설의 부대시설인 경우에는 해당공종으로 분류
 - ◈ 마트의 주차장은 「사무실·점포·숙박시설·오락장·도매시장(102)」으로 분류

조

人

(1) 토목

○ 목재나 철재·토석 따위를 사용하여 땅과 하천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도로· 둑·교량·항만·철도·상하수도 등)을 건설하거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

(가) 치산, 치수 및 사방 하천 (201)

- 치산, 치수공사
- 산림 및 하천보존을 위하여 시행되는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 0 사방공사
- 흙이나 모래 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공사
- ㅇ 하천공사
- 하천관리를 위한 공사외 하천시설물(수제, 통문, 갑문, 수문 등)설치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 저수지공사(농업용 저수지 제외)
- 하천 및 우수를 모아 저장하는 저수지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 해안제방(방조제), 해안 침식대책, 개수공사 등 □ 방파제는 항만으로 분류

용 어 정 의

- 치산(治山) : 산을 손질하여 잘 다스림
- 치수(治水) : 하천, 호수 등을 잘 다스려 범람을 막고 관개용 물의 편리를 꾀함
- 사방(砂防) : 산, 바닷가, 강가 등의 모래나 흙이 바람, 비에 씻기어 무너지거나 떠내려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하는 일
- 방조제(防潮堤): 조수간만의 차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쌓은 둑
- 개수(改修) : 길, 제방 등을 고치어 닦거나 수축함
- 방파제 : 부두 외곽에 설치하여 선박 등의 정박을 용이하게 하는 둑

(나) 농림수산 및 관개수로 (202)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를 위한 토목공사 발주는 『농림·수산(202)』 으로 분류
- ☞ 『토지조성(208)』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농업시설공사, 간척, 개간, 관개, 농업용저수지, 어항, 양식시설, 육묘장 등



(다) 도로·교량, 도로터널 및 야외주차장 (203)

- 도로, 도로교량, 육교, 고가도로, 지하도, 도로터널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인도, 중앙선분리대, 인터체인지 등), 유원지주차장, 야적장포장, 노상 주차장
- □ 주차장, 야적장의 경우에는 일반도로 옆의 주차장, 부두의 주차장, 공원의 주차장, 공항의 주차장 등 해당 용도의 부대시설로 보아 공종별 분류
 - ◈ 항만의 주차장, 야적장은 '항만(204)'으로 분류
 - ◈ 유료주차장, 임시주차장(엑스포 등)의 경우에는 '도로(203)'로 분류

(라) 항만·공항 (204)

- 항만, 인공섬 축조, 부두설비, 방파제, 부교, 항만 준설(浚渫)공사, 항만 야적장공사
 - 접안시설, 방파제, 갑문, 배(선박)를 정박하거나 수리를 위한 시설물공사 등 항만 관련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 공항부지조성(항공운송터미널 제외), 급유설비, 저탄장, 활주로 및 유도로, GATE 및 계류장 설치공사 등

(마) 철도·궤도 및 지하철(도시철도) (205)

○ 철도, 철도터널, 지하철, 철도교량, 레일공사, 침목공사

(바) 상・하수도 (206)

- 상수도 설비공사(취수, 정수, 배수 등), 하수 송·배수관 설치 및 하수도관련 토목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관거, 맨홀 등), 정수장 설치를 위한 기기설치 및 각종 부대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등
- 건물내의 배관공사 (예: 도시가스 배관)는 해당건물의 주된 용도로 분류하나, 토목공사를 겸한 배관공사인 지역난방 열수송관, 송유관 공사 등은 『기타 토목(219)』으로 분류하고, 상・하수도관 공사는 『상・하수도(206)』로 분류

징

조 시

(사) 발전·송전, 옥외 전기·통신공사 (207_기성:전기기계)

- 수력, 화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소 시설을 위한 기계, 기구 등의 설치와
 송・변전, 옥외배전시설, 통신기지국, 전화노선공사, 전기통신 선로공사 등
 - □ 한국통신에서 전화선을 매설하기 위한 <u>도로유관 관로공사</u>는 『전화공사(207)』로 분류

(아) 토지조성(208)

- 택지조성
- 택지(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토목구조물 공사 포함)
- ㅇ 공업용지조성
 - 공업용지 및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 ㅇ 골프장 조성

(자) 댐 (209)

○ 용수공급댐공사, 수력발전댐공사(건축공사제외), 홍수조절댐공사, 다목적댐 공사, 하구언공사 등

(차) 기계설치 (210_기성 : 플랜트)

- 하수종말처리장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기설치 및 각종 부대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 폐수종말처리장
 - 각종 농업, 임업, 공업용 폐수처리를 위한 기기설치 및 각종 부대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 쓰레기소각장
- 쓰레기 소각 처리를 위한 기계시설공사
- 기타환경시설공사
 - 소음 · 진동방지시설
 - 대기환경측정 및 정화시설공사(집진기설치공사, 오염방지공사)
- 기타 위에 분류되지 않은 환경시설 공사

- 제철소, 석유화학 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 제철생산(전기로 및 고로 등), 석유화학 생산(기중기설치 등)을 위한 기계설치 공사
- ㅇ 기타 플랜트 설비공사
- 각종 제조 등 공장시설의 기계설치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 도시가스저장탱크조립공사 등 유류 및 가스저장시설 공사, 탱크조립설치 공사, 화학물 처리설비설치공사, 산업설비설치공사, 광산설비설치공사, 제조설비설치공사, 화학공업설비설치공사 등

(카) 조경공사 (211)

- ㅇ 수목워
- 경관 및 환경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이식 및 보호 유지공사
- 지표면 녹화를 위한 공사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ㅇ 공원조경공사
 - 공원의 벤치 및 음료수대, 놀이기구, 운동기구 등의 편의시설공사
- 공원내의 분수대 및 인공연못 설치공사
- 기타조경시설공사
- 위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조경시설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타) 기타 토목 (219)

- ㅇ 송유관
 - 유류 또는 가스운반을 위한 송유관·가스관 부설공사 및 관련 플랜트 시설공사 와 이와 유사한 공사
- 산성, 성곽, 능, 석굴, 유적지 복원공사
- 군사시설용 토목공사, 장례 및 묘지시설을 위한 토목공사, 기타토목공사
- 준설(항만준설제외), 동굴공사, 삭도(索道)공사 등

용 어 정 의

- 索道: 강철선에 운반차를 달고 사람, 물건을 운반하는 장치(케이블카, 리프트 등 설치공사)

2) 발주자별 분류

가) 발주자별 분류 항목표

○ 건설수주

부호	발주자명	부호	발주자명	부호	발주자명
10	ㅇ 공공	20	ㅇ 민간	3000	ㅇ 국내외국기관
1010	- 정부	21	- 제조업		
1020	- 지방자치단체	2110	·음식료품제조업	2**1	ㅇ 민자유치사업
1030	- 공기업	2120	·섬유의류제조업		- 민간의 발주자분류코
1090	- 기타공공단체	2130	·석유화학제조업		드 네 번째에 '0' 대신
		2140	·1차금속제조업		'1'로 구분
		2150	·기계제조업		
		2190	·기타제조업		* 외국기업체는
		22	- 비제조업		민간으로 분류
		2210	·운수창고통신업		
		2220	·도소매금융서비스등		
		2230	·부동산업		
		2250	·건설업		
		2290	·농림어업,광업,수도		
			전기업 및 산업분류		
			대상외		

○ 건설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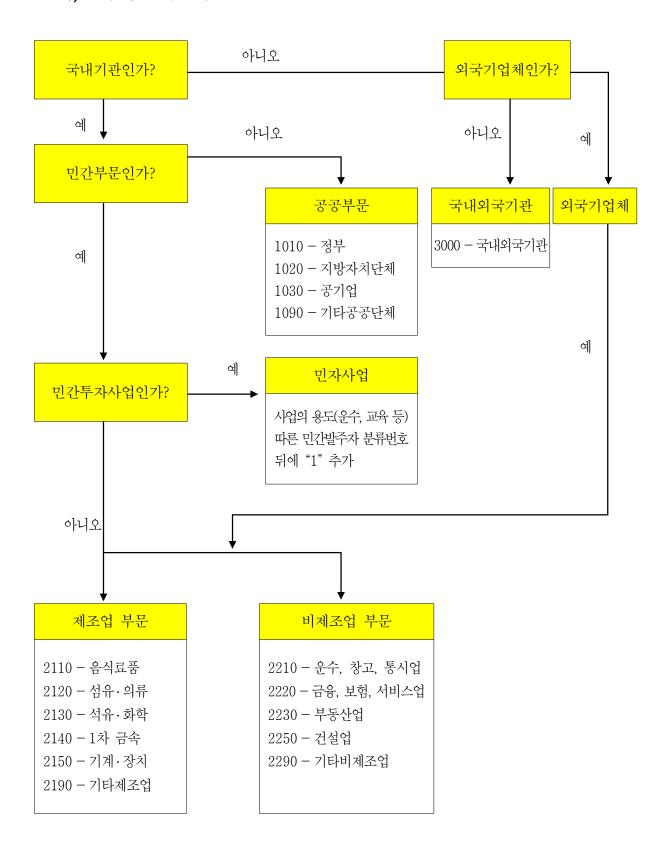
부호	발주자명	부호	발주자명	부호	발주자명
101	 공공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기타공공단체	20 201 202 20*	 ○ 민간 - 직영공사¹¹ - 도급공사²¹ · 외국기업체 민간으로 분류 	301 401	 민자유치사업 국내외국기관 *외국기업체는 '민간'으로 분류 됨에 유의

주 1) 직영공사 : 조사대상 건설업체의 필요에 의하여 자기가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산하기업 또는 모기업을 위한 경우는 도급으로 분류

2) 도급공사 : 시공사(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시행사(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도급공사는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공사를 말함



나) 발주자 분류 흐름도



조

人

다) 항목별 분류 해설

(1) 공공부문

(가) 정부 (1010)

- 중앙행정기관(각원, 부, 처, 청, 위원회)
- 특별지방행정기관
- ㅇ 각급 군부대
- 각급국립학교(국립대학교 및 부속 초·중·고등학교, 산업대학 등)
- 각종헌법기관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입법부(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등)
- 사법부(대법원, 각급법원 및 지원, 등기소 등)

(나) 지방자치단체 (1020)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자치단체(구,시,군) 및 직영사업소
- 지하철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본부, 지역개발기금 등
- ㅇ 교육위원회, 구, 시, 군 교육청, 공립학교
- □ 사립학교는 민간 비제조업의 『금융, 보험, 상업·서비스업(2220)』으로 분류
- ㅇ 소방관서 등

(다) 공기업 (10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1항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공기업과 공공단체를 지정
 - ⇒ 정부지분, 임원임면권, 예산편성권, 국정감사 수감 여부, 설립근거법 등을 참고하여 분류함

- ①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
 - 시장형 6개기관, 준시장형 18개 기관
- ②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직접 혹은 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이상 되는 기업은 공기업으로 분류
- ③ 제3섹터(민·관 공동출자기업)
 -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업이나 공사를 설립한 기관을 통칭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이상은 공공으로 분류
 - ◆ 분류기준 : 공공과 민간의 출자비중과 설립근거법, 대표이사 선출방법,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을 고려하여 민간과 공공으로 분류

(라) 기타공공단체 (1090)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및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서 개별법의
 존재, 대표이사 선출방법,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가 등의 여부로
 판단
 - 출연기관 : 운영비, 사업비 등 기관소요경비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받는 기관
 - 보조기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
 - 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②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③ 기타공공기관
- ※ 공공부문의 경우 지침서를 참고하되 명시되지 않은 단체일 경우에는 관련자료 확인 후 분류함. 또한 관련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개정시점에 지침을 변경함

人

※ 공공부문의 세부분류사항 (공공부문의 신설 및 이동은 정부의 조직개편시 이루어짐)

▋ 공공부문의 분류

- 정부(분류부호 1010)
-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
- 각급 군부대, 각급 국립학교, 각종 헌법기관, 입법부, 사법부
- 지방자치단체(분류부호 1020)
- 지방자치단체 및 직영사업소, 시·군·구교육청,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방관서, 보건소, 자치단체별 교육위원회,
- 지방공기업 중 직접경영사업단체
- ⊙ 공기업(분류부호 1030)
-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 지방공기업(간접경영사업단체 중 지방공사, 지방공단)
- 기타공공단체(분류부호 1090)
-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였으며 각종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자료출처

▼ 정부조직(행정안전부)

http://org.mogaha.go.kr/org/guestLogin.do?method=guestLogin > 게시판

- 공공기관창의경영시스템(기획재정부)
 - 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공공기관이란?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 http://www.cleaneye.go.kr/ > 정보마당 > 자료실

▮ 기타 참고사이트

• 비영리민간단체현황(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 재난안전실 > 비영리단체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분류부호 - 1010)

	기관유	구형	기관명
	대통령	명직속(5)	대통령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가교육 과학기술자문회의
중	국무총	리직속(5)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특임장관
_	각	처(2)	법제처, 국가보훈처
60 등	각박	쿠(15)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정 기 관	각경	텅(18)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u>친</u>	위원	<u></u> 회(7)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노동행정기관	노동부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사무소
	세무행정기관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지서
	세구왕경기건 	관세청	세관, 세관감시소
		법무부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지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지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외국인보호소
	공안행정기관	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
특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별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파출소
지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사무소, 철도공안분소
	현업행정기관	지식경제부	체신청, 우체국, 우편집중국
방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공정거래사무소
행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지방보훈지청
정		조달청	지방조달청
		통계청	지방통계청, 통계사무소
기		병무청	지방병무청,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지방병무지청
관		기상청	항공기상관리본부, 공항기상대, 공항기상관측소, 지방기상청, 기상대, 레이더 관측소, 기상관측소
	기타행정기관	산림청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본부, 산림항공관리소
	기다행정기선	지식경제부	광산보안사무소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특허청	서울사무소
		보건복지가족부	국립검역소,국립검역소지소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약청, 수입식품검사소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출장소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지방항공청, 지방공항출장소,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도유지건설사무소출장소, 항공관리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07. 8월 현재 23개 기관에 4,493개 설치·운영중에 있음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지정근거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

○ 공공기관의 유형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

공기업(분류부호 - 1030)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분류부호 - 1090) : 기타공공단체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분류부호 - 1090) : 기타공공단체

- ▶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별도의 설립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무자본특수법인임
 - 한국은행(한국은행법)과 한국방송공사(방송법)
 - * 정치적인 독립성을 위하여 그 운영이 정부와는 완전히 독립됨. 따라서 별도의 주무부처가 없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였으며 각종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서울, 송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경북, 포항, 충북, 충남, 전북, 전남테크노파크,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 2009년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296)

	공기업(분류부호-1030)		기타공공단체(분류부호 - 1090)		
주무부처	중기업(군	규 수 오-1030)	준정부기관		
(296)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6)	(17)	(16)	(64)	
기획재정부(3)		한국조폐공사(1)			
교육과학기술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40)			리공단(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5)	
외교통상부(3)					
법무부(3)					
국방부(3) 행정안전부(4)			공무원연금관리공단(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2)	
문화체육관광부 (31)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3)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3)	
농림수산식품부 (8)		한국마사회(1)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 <i>농어촌</i> 공사(3)	
지식경제부(67)	<u>한국가스공사</u> , <u>한국전력공사</u> (2)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4)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i> <i>공단(3)</i>	한국석유관리원, 광해방지사업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제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다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20)	
방송통신위원회 (4)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3)	
보건복지가족부 (17)			국민연금공단(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5)	
환경부(6)				국립공원관리공단, 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4)	
노동부(10)		산재의료관리원(1)	근로복지공단(1)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5)	

7 7 11 -1	.ચનોબો(!	크리 · 1020)	기타공공단체(분류부호 — 1090)			
주무부처 (296)	ठ/।ध(र	클류부 호-1030)		준정부기관		
	시장형 공기업(6)	준시장형 공기업(17)	기금관리형(16)	위탁집행형(64)		
국토해양부(37)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4)	대한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8)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7)		
국무총리실(24)						
국가보훈처(3)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		
문화재청(1)						
산림청(1)						
중소기업청(6)			중소기업진흥공단(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		
특허청(2)						
금융위원회(18)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5)	<u>한국</u> 예탁결제원, <u>한국거래소</u> (2)		
방위사업청(2)	<u>.</u>					
공정거래위원회(1)	<u> </u>			한국소비자원(1)		
경찰청(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1)		
소방방제청(1)				한국소방검정공사(1)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지침서

주무부처	기타공공단체(분류부호 - 1090)
(297)	기타공공기관(193)
기획재정부(3)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2)
교육과학기술부 (40)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34)
외교통상부(3)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3)
법무부(3)	대한법률구조공단, <u>정부법무공단</u> , <u>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u> (3)
국방부(3)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3)
행정안전부(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1)
문화체육관광부 (31)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경북관광개발공사,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 (재) <i>멸동</i> 정동극장, 저작권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언론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23)
농림수산식품부 (8)	(주)농지개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i>특수법인</i> 한국어촌어항협회(4)
지식경제부(67)	기초전력연구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자가래진흥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별정우체국연합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38)
방송통신위원회 (4)	<u>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u> (1)
보건복지가족부 (17)	국립암센터, 대한결핵협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한국청소년진흥센터, <u>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u>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11)
환경부(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친환경상품진흥원(2)
노동부(10)	학교법인기능대학,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4)

Y

주무부처	기타공공단체(분류부호 - 1090)
(297)	기타공공기관(193)
국토해양부(38)	(주)코레일개발, (주)코레일엔지니어링,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투어서비스(주),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코레일트랙(주), 코레일전기(주), 한국토지신탁,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08추가)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보안(주), 부산항보안(주),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18)
국무총리실(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4)
국가보훈처(3)	88관광개발(주)(1)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보호재단(1)
산림청(1)	녹색자금관리단(1)
중소기업청(6)	시장경영지원센터,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4)
특허청(2)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2)
금융위원회(18)	한국자산신탁(주), (주)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주),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주)아이비케이시스템 (주)정리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11)
방위사업청(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2)
공정거래위원회(1)	
경찰청(1)	
소방방제청(1)	

○ 농협중앙회의 조직의 발주자 분류(수협포함)

[공공단체(분류부호 - 1090)]

- 경제사업부문
- GAP인증 활성화, 선진재배기술보급, 맞춤형축산컨설팅, 미곡종합처리장(R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축산물가공센터(LPC), 농축산자재공급, 면세유공급, 농업인공동브랜드 육성, 축산물공급시스템 확충, 하나로마트, 지역농축협판매장(SSM), 사이버쇼핑몰(NH쇼핑)
- 교육지원(지도관리)부문
- 도농교류활동지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영농현장컨설팅, 의료지원 등 농업인지원, 글로벌 문화체험단,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 등 문화복지활동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분류부호 - 2220)]

- 신용사업부문
- 예금, 대출, 카드, 외환, 보험, 증권, 신용보증

○ **2008 - 2009** 공공기관 변동사항

주무부처	변동내역	기업형태	2008	2009
교육과학기술부	제외	기타공공기관	극지연구소, 고등과학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공공기술연구회	-
	명칭변경	기타공공기관 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법무부	추가	기타공공기관	-	정부법무공단
UTT	명칭변경	기타공공기관	한국갱생보호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문화체육관광부	명칭변경	기금관리형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집행형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재)정동극장	(재)명동정동극장
	제외	기타공공기관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재)서울예술단	_
농림수산식품부	명칭변경	위탁집행형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기타공공기관	한국어촌어항협회	특부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
	제외	기타공공기관	농림기술관리센터	-
지식경제부	추가	기금관리형	_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위탁집행형	-	한국우편물류지원단
	명칭변경	기타공공기관	(재)우정복지협력회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위탁집행형	요업(세라믹)기술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석유관리원
	제외	위탁집행형	우정사업진흥회	-
		기타공공기관	국가보완기술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정성평가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
방송통신위원회	제외	기타공공기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	추가	기타공공기관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노동부	추가	기타공공기관	_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제외	위탁집행형	한국노동교육원	-
국토해양부	추가	기타공공기관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제외	기타공공기관	코레일애드컴(주)	-
중소기업청	위치이동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타공공기관	기금관리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위탁집행형
금융위원회	추가		-	한국거래소
	명칭변경	위탁집행형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제외	기타공공기관	금융감독원, 기보캐피탈	-

조

시

□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에서 지방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경영(국가공기업과 구분)
 - 특정 공공수요를 특정 개개인에게 충족시키고 수익자 부담원리에 의해 비용을 부담시킴(일반행정과 구분)
 - 비권력적인 서비스 행정(일반행정활동과 구분)

2. 지방공기업 목적사업의 필요성

- 주민의 복지와 편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존립목적과 합치
- 채산성이 없는 사업은 민간자본의 투자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영사업 운영이 불가피함
- 지역독점적인 공익사업은 일반적으로 공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기업에만 맡길 경우 공익성의 저하 등 폐해 우려)
- 사업의 성질상 일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경영 해야 할 필요성이 강한 사업이 있음(예 : 대도시 교통사업 등)
- ◘ 주민의 의사를 사업 운영에 최대한 반영 가능
- 각 지역실정에 적정한 공공정책(도시정책, 사회정책, 산업정책 등)을 사업운영에 반영 가능
- ▼장기・저리자금의 대량조달이 비교적 용이(공신력, 조세권 담보)

3. 지방공기업의 특성

- 공익성(사적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복리의 추구)
- 적정이윤을 추구하면서 원가절감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킴
- 채산성이 없더라도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사업을 운영(예 : 벽지 공용버스 운영, 비수익병원 운영, 고지대 급수 등)



- 기업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가져야 함)
- 수지균형 유지가 바람직
- □ 독립채산제(형식면)
- 기업형태 유지(형식면)→창의적・신축적으로 운영→사업효율성 제고(내용면)
- 지역성(소유 경영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관할 행정구역에 따른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나, 최근에는 광역공기업의 설치 필요성 등이 요구되고 있음)
- 상・하수도, 청소・위생, 교통사업 등
- 공익성 기업성 지역성의 조화(사적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복리의 추구)
- 공공성과 기업성은 보완관계 또는 상충관계 일수도 있으나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공공성 강조시→기업성 악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비용 소요, 기업성 강조시→ 공공성 저해로 설립목적과 상치되는 사례 발생)
- □ 지역여건에 따라 공익성과 기업성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은 지역간 서비스의 내용이나 가격 등이 달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함

4. 지방공기업의 영역

- 법 당연적용사업
 -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하수도 등 8종 (사업규모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시는 6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방공기업 전환)

번 호	사 업 명	적 용 기 준
1	수도사업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3	궤도사업	보유차량 50량 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 이상
5	지방도로사업	도로관리연장 50㎞ 이상 또는 유료 터널·교량 3개소 이상
6	하수도사업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7	주택사업	주택관리연면적 또는 주택건설면적 10만㎡ 이상
8	토지개발사업	조성면적 10만㎡ 이상

Y

- 법 임의적용사업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 적용 가능

-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증진·지역경제 활성화·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법 당연적용사업 중 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5. 지방공기업의 분류

직영기업(지방자치단체 분류부호 - 1020)

•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 분류부호 - 1030)

■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환경, 경륜, 주차관리공단 포함), 기타공사・공단

기타출자법인(주식회사, 재단법인 분류부호 - 2***)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50% 미만을 출자,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함께 설립



6. 지방공기업의 형태별 특징

경영 방식	설립형태 (주체)	운영방식	민간 참여	출자 규정	비고
직접경영	공영개발사업단 (지방자치단체)	부서단위를 사업단 형식으로 확대 하여 운영	불가	지자체 100%	일반 행정방식을 경영행정방식 으로 바꾼 형태(기업회계)
지방공단 지방공사 간접경영 지방공사형 제3섹터 私法人型 제3섹터 (주식회사, 재단법인)	지방공단	공공성확보의 필요성과 업무상의 효율성 증대 및 원가개념의 도입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및 행정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 직접 사업	불가	지자체 100%	일종의 특별법인 형태로서 일부 사항 이외에는 상법상의 법인과 동일함
	지방공사	공공성정도에 따라 민간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자체가 전액 출자하여 법인 형태를 갖추어 공동으로 사업 (예: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불가 운영에 대한 참여 가능	지자체 100%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3섹터 형태
		제한된 범위내에서 민간참여를 허용 하여 공공과 민간이 법인형태를 갖추어 공동으로 사업(예: 장흥표고유통공사)	가능	지자체 50%이상 민간 49%미만	지방공사의 법인형태와 동일
	제3섹터 (주식회사,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허용하여 공공과 민간이 법인형태를 갖추어 공동으로 사업. 상법상의 주식회사,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가능	지자체 50%미만 민간 50%이상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배제, 민간의 주도적 참여 가능

※ 제3섹터, 준정부기관

- ① 민간부문의 조직형태를 취하면서도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재된 기관(조직)
- ② 비영리 조직, 그림자 국가, 감추어진 공공영역, 공유된 정부, 계약국가 등
- ③ 정부팽창의 은폐수단이나 정부의 책임회피수단. 통제가 곤란
- ④ 우리나라 지방행정 실무에서는 민·관 공동 출자사업이나 법인(공공부분 출자 비율 50%미만)을 의미

제3섹터와 민간투자사업의 구분 요령

- 제3섹터의 경우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말하며,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발주한 공공사업을 말함
- 제3섹터의 경우 사업대상이 자유로우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사업을 말함
- 제3섹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민간투자사업일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

7. 지방공기업 현황(369개)

(1) 직접경영사업(238개)

(2009. 7. 1. 기준)

세부사업별	단체수	단체 별
Л	238	지방자치단체(분류부호 - 1020)로 분류
상 수 도	112 (특·광역시 7, 시 76, 군 29)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 의정부,남양주,평택,광명,시흥,군포,화성,파주,이천,구리,포천군,광주,안성, 하남,의왕,양주군,오산,여주군,양평군,동두천,과천,가평,김포,연천군,춘천, 원주,강릉,동해,대백,속초,삼척,홍천군,정선군,철원군,영월군,평창군,인제군, 고성군,청주,충주,제천,옥천군,청원군,음성군,단양,천안,공주,보령,아산, 서산,논산,예산군,당진군,홍성군,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부안, 고창,목포,여수,순천,나주,영암군,광양,화순,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 영천,상주,문경,울진군,경산,칠곡,의성,영덕,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 김해,밀양,거제,양산,창녕군,거창군,함안군,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하 수 도	75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수원,성남,부천,안산,의정부,광명,구리,과천, 시흥,포천,오산,여주,용인,군포,의왕,남양주,안성,광주,안양,김포,가평,평택, 화성,동두천,파주,연천,춘천,속초,강릉,충주,청주,제천,공주,천안,아산,서산, 보령,당진,전주,익산,정읍,완주,나주,목포,순천,영암,화순,경주,상주,구미, 영천,경산,안동,영주,포항,칠곡,진해,창원,김해,진주,사천,마산,통영,밀양, 양산,거제,거창,창녕,제주
공영개발	35 (시도 1, 시·군 34)	인천,수원,성남,고양,의정부,남양주,시흥,구리,안성,의왕,오산,고양관광문화단지, 판교IT업무지구조성,춘천,원주,강릉,속초,충주,음성군,계룡,천안,보령,아산, 연기군,익산,목포,순천,광양,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밀양
지역개발 기 금	16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경남,제주



(2) 간접경영사업(160개)

형태별	사	· 업 별	단체수	단 체 별
			160	
	소 계		43	지방공기업(분류부호 - 1030)으로 분류
	X	하 철	7	서울(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5	시개발	16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 방 공 사	기타	지자체 출자비중 100%	25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관광공사, 김대중컨 벤션센터,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경기관광공사, 광주지방공사, 용인지방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남양주시도시공사, 평택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양평지방 공사, 안산도시공사, 춘천도시개발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여수시도시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50%이상	3	경기평택항만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소	<u>.</u> Л	80	지방공기업(분류부호 - 1030)으로 분류
지 방 공 단	1 114 =174		80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부산, 기장군, 대구, 인천,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대전, 울산, 남구, 울주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안성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안산시, 군포시,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춘천시, 속초시, 동해시, 정선군, 청주시, 단양관광관리공단, 전주시, 구미시, 안동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소	<u>`</u> Л	37	민간(분류부호 - 2 * * *)으로 분류
지자체 25~50% 회 사		26	서울관광마케팅(주), (주)벡스코, 부산관광개발(주), (주)엑스코, (주)광주 광역정보센터,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안산도시개발(주), (주)강원심층수, 청원레저(주), 와인코리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속리산 유통, (주)삽교호함상공원, (주)홍주미트, (주)무안황토랑유통공사, 청해 진미완도전복(주),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화순 농특산물유통회사, 경북통상(주), (주)울진로하스코리아, (주)울진농수산물 유통농업회사, (주)경남무역, 가온소프트(주),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토요애유통(주), 마산해양신도시(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지자체 25% 만출자	11	강남모노레일(주), 인천대교(주), 한국씨이에스(주), 수완에너지(주), (주)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주)케이알씨넷, (주)아름다운인제관광, (주)청주 테크노폴리스, (주)완도수산물유통, (주)케이씨피드, (주)제주항공

징

조 人

(2) 민간부문

(가) 제조업

-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
- ☞ 따라서 단순한 상품의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Ⅱ 음식료품제조업 (2110) : 중분류 10~11

- 농업 및 임업,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 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음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
-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 낙농제품, 곡물가공, 전분 및 사료제조업, 기타식품제조, 음료제조(알콜, 비알콜) 등

② 섬유·의류 제조업(가죽제품, 신발 제조업 포함) (2120) : 중분류 13~15

- 섬유물질을 가공하여 생사 및 각종 섬유사, 연사, 끈, 로프, 망 및 기타 끈제품 제조
- 각종 섬유사로 광폭직물, 세폭직물, 편조원단, 카펫 등의 직물 및 편조물 제조
- 각종 섬유사, 직물, 편조물 및 직물제품의 염색, 표백 및 가공 정리활동
- 직물에 다른 물질을 도포, 삼투, 방수 및 기타 처리한 가공직물 제조
- 부직포, 펠트, 충전용 솜 및 기타 섬유제품 제조
- 각종 직물, 편조원단, 가죽 및 기타 재료(모피 제외)를 재단·재봉하여 의복을 제조
- 천연 및 재생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죽, 플라스틱, 직물, 경화섬유판지 및 기타 재료로 가방, 핸드백, 동전지갑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를 제조
- 각종 재료(석면제외)로 각종 목적용(정형외과용 제외)의 신발, 각반, 정강이 받이 등과 신발 부분품을 제조



③ 석유·화학 제조업(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포함) (2130): 중분류 19~22

- 석탄을 처리하여 연탄, 코크스 및 관련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원유, 역청 광물 및 이들의 분할물을 정제 또는 기타 처리(연탄 제조포함)
- 산, 알칼리, 염, 기타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등의 산업용 기초 화합물, 비료 및 질소화합물,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화학섬유 등의 중간 화합물,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도료 및 잉크, 비누 및 화장품 등 기타 화학제품 제조
- 인간 또는 동물의 각종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제조
- 구입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물질을 시출·압출·성형 및 기타 가공하여 각종 형태의 가정용, 공업용 또는 기타용의 1차 제품,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

4 1차 금속제조업 (2140) : 중분류 24

- 고로, 전기로, 압연 및 기타 가공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광물, 금속스크랩 또는 찌꺼기를 제련·정련·용해·합금처리·주조·압출·압연 및 연신· 금속표면처리 및 기타 처리하여 각종 1차 형태의 금속제품 및 주물제품을 생산
- 제철업, 제강업, 철강압연, 압출 제조업,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철강주조업, 비철금속 주조업

⑤ 기계제조업 (2150) 중분류 25∼31

- 각종 조립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조용 금속제품, 증기발생기
 및 중앙난방용보일러, 분말야금제조와 금속임가공 처리업, 일반철물,
 철선제품, 가정용 금속제품 및 기타 조립금속제품을 제조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人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⑤ 기타 제조업(2190): 중분류 12, 16~18, 23, 32~33

- 담배, 제재 및 목재 가공,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비금속 광물제품, 가구, 기타 제품제조업
- 건조된 잎담배를 구입하여 재건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각종의 담배를 제조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나무제품,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펄프 제조, 종이 및 판지를 제조, 종이를 재가공하여 가공지, 종이용기와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제품을 제조
-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기록매체 및 기타 간행물의 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를 제공, 오디오물, 영상물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록물을 복제
- 유리제품, 요업제품,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와 이들의 가공품, 석재 가공품 및 암면제품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
- 각종 재료(석재, 시멘트 또는 도자기제 제외)로 가구, 캐비닛 및 관련 장치물과 매트리스 등을 제조
- 귀금속제품, 악기류, 운동·경기용구 및 오락용품, 모조장신 및 장식품, 흥행 및 유희용품, 사무용품, 회화용품 및 기타 잡제품을 제조

(나) 비제조업

① 운수·창고 및 통신업 (2210) : 중분류 49∼52, 61

-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
-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 운송
- 화물취급업, 창고시설 운영업, 기타 운송지원서비스업 수행
- 일반대중이나 다른 기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우편사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 통신업

② 도소매,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등 (2220)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 ~ 39)
-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도매 및 소매업(45 ~ 47)
-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
- 숙박 및 음식점업(55 ~ 56)
-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
-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 ~ 63)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64 ~ 66)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농·수협중앙회: 경제사업부문, 지도관리부문에서 발주한 경우는 기타공공 단체(1090)로 분류하고, 신용사업부문은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2220)으로 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 ~ 73)
-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활동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조

人

-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기술 서비스, 지질 또는 지구물리학적 조사 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시험 서비스 등의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인테리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디자인 전문 서비스활동과 수의 활동, 번역 및 통역 등의 기타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산업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
-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경호 및 보안시스템운영 등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교육 서비스업(85)
-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학령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포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 87)
-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 협회 및 단체,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③ 부동산 및 임대업 (2230): 중분류 68, 69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



- 개인, 가정 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무형재산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도 포함
 - ◆ 직장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발주자 분류는 『부동산업 (2230)』으로 분류
 - 재개발 사업을 위한 "○○재개발사업"은 발주자 분류를 『부동산업(2230)』으로 분류
 - 개인이 자가주택 및 타산업활동(창고업 등)을 위하여 발주할 경우 현재 「부동산・임대(2230)」에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는데, 자가주택은 「기타 비제조업(2290)」, 산업활동 목적은 「해당 산업분류(2210 등)」를 적용

④ 건설업 (2250): 중분류 41, 42

○ 건물 자영건설업(<u>자기계정에 의하여</u> 아파트 또는 사무실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건설업체), 지반 조성공사업,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건설장비 임대업(운전사 딸린), 건축 마무리공사업, 건축물 축조 및 토목 공사업

⑤ 기타 비제조업 (2290): 중분류 01 ~ 08, 35, 36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철광업, 석회석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산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분류
 - 순수 개인(산업활동 목적이 아님), 리사무소 등

(다) 국내 외국기관 (3000)

- 주한 미군, 주한 외국공관, 기타외국기관
 - ◈ 외국기업체는 민간으로 분류함에 유의

(라) 민자유치사업

▷ 민자유치사업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민간업체가 시행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사업

▷ 발주자별 재화성격. 소유권 비교

<u>발주자</u>	<u>재화성격</u>	_소유권
공공	공공재	국가,지자체
민간	사유재	민간
민자유치	공공재	민간, 국가

П

① 대상사업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제2조 제1항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로 시행하여 왔던 공공성이 강한 시설과 국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 조속한 확충이 필요한 시설 등이 대상
 - ⇒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전기 통신설비, 가스공급 설비, 정보통신망사업 및 사회, 문화, 교육시설 등
- ☞ 항만, 도로, 공항, 철도, 터미널 등을 민간업체가 발주하였을 경우 민자사업여부를 주의하여 조사
- □ 2001년 법령개정으로 추가된 대상사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사업을 추가함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기부채납 등의 형태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 기타 주무관청이 수립한 민간자본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 민간투자방식

○ BT(Build-Transfer) 방식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물을 건설한 후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투자비와 적정 수익을 받게 되는데 이 방식은 전략적인 이유로 시설 운영을 관련기관 또는 정부가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음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부여

○ BOT(Build-Own-Transfer) 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

시설완공 후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귀속되어 일정기간 운영 후 정부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기법상 BOT와 별 차이가 없으나 사업주에 의한 시설의 소유를 강조하기 위해 구분

○ BOO(Build-Own-Operate) 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인정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민간이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기부채납하면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하며 민간사업자는 동 운영권을 정부에게 일정기간 임대하면서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는 민자사업의 형태이며 운영수입만으로 민자사업이 어려운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

○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며, 약정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人

기간 동안 정비한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LBO(Lease-Build-Operate) 방식
 기존의 정부소유 시설물을 리스하여 민간이 보수 확장공사를 한 후 운영하며,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보유
- ROO(Rehabilitate-Own-Operate) 방식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인정
- BBO(Buy-Build-Operate) 방식 기존의 시설물을 정부로부터 구매하여 민간이 보수, 확장공사를 한 후 정부의 규제하에 운영
- CAO(Contract-Add-Operate) 방식 정부소유의 기존시설에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추가하여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을 가짐
- DOT(Develop-Operate-Transfer) 방식 사업시행자가 연관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한 후 그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
- BOS(Build-Own-Sell) 방식
 사업시행자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매각하고, 주무관청과 리스로
 시설대여를 받아 운영

Ш

내용검토 및 입력

. " • • • • • • • • • • • • • • • • • •
1. 내용검토 73
가. 조사표검토 73
나. 인터넷조사(CASI)기업체의 조사내용 검토 및 유의사항 73
2. 자료입력 74
2. 자료입력 74 가. 입력에 관한 일반사항 74
가. 입력에 관한 일반사항 74

및

П

Ⅲ. 내용검토 및 입력

1. 내용검토

가. 조사표 검토

- ㅇ 기업체고유번호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함
- 금액단위는 "백만원"단위이므로 "천원"단위로 잘못 기입되지 않았는지를 검토
- 공사명과 발주자명이 바르게 기입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공종 및 발주자 세분류 명의 분류부호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 ㅇ 공사기간에 따른 수주액이 타당한지 검토
- 변경계약(증액,감액)된 수주금액을 조사시 증감된 금액만을 반영하였는지 확인
- 기성조사의 경우 당월의 기성실적을 조사하는 것에 주의
- 전월자료와 비교하여 증감차이가 현저한 경우 누계액이 아닌지 재차 확인
- 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수주액이 착오로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하도급 받은 수주공사 및 기성실적을 조사할 경우 원도급업체와 중복 조사되어 총수주액 및 총기성액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조사에서 제외함
- 수주계약 당시에 발주자공급원자재비의 유무를 확인하여 총수주액에 포함시킴
- 실제 시공실적이 아니라 분기 또는 연말에 발주처에 청구한 금액(관기성)이나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으로 오해하여 응답하였는지 확인
- 실적물량 기준으로 기성실적을 구하는 경우 이용되는 단가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단가인지 확인
- 이 해당 월의 수주 및 기성실적인지 확인

나. 인터넷조사(CASI) 기업체의 조사내용 검토 및 유의사항

○ CASI조사는 지방청(사무소)과 기업체까지의 거리나 수시 방문에 따른 응답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조사표 내용에 대한 검토책임은 조사담당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기업체 응답자를 방문시, 조사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하여 조사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특히 응답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조사내용을 다시한번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함
- 조사내용의 잠·확정여부, 증감사유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부정확한 경우 응답자에게 확인 후 수정함
- 잠정자료는 응답자가 임의로 작성한 경우가 많아 확정치와 차이가 크게 발생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잠정치 작성방법을 확인하여 실제 실적에 근접하게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자료입력

가. 입력에 관한 일반사항

1) 명부 입력 기한

- 지방청 : 매월 1일 ~ 5일
- 본청
 - 일반적인 보완사항 매월 1 ~ 말일
 - 기업체 전입, 전출, 대체 매월 1일 ~ 10일(해당월 자료 입력전)

2) 자료 입력 기한

- 건설수주 : 매월 11일 ~ 18일 18:00
- 건설기성 : 매월 11일 ~ 22일 18:00
- ↔ 조사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일 18:00

3) 조사표 입력

- 검토가 끝난 조사표는 지정된 기일내에 입력하되, 입력기한을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동향과에 통보한 후 최대한 조기에 마쳐야 함. 입력마감 후 조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조사표를 송부하여야 함
- 실적이 없거나, 휴업(불응 포함)중이라도 자료는 매월 입력하여야 함
 - 이때, 무실적 기업체는 무실적, 불응 기업체는 불응처리 후 사유 입력함

○ 실적이 전년동월, 전월에 비하여 30%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는 비고사항에 증감사유를 반드시 입력함

4) 시스템 권장사향

가) H/W 권장사양

○ O/S : 최소사양 Windows 2000

○ O/S : 권장사양 Windows XP

○ CPU: 최소 Pentium IV 2.8Hz 이상

○ Memory : 최소 1G RAM 이상

○ Hard Disk : 최소 100G 이상

○ Display : 1024 x 768 모드 이상

나) S/W 권장사양

○ Web Browser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6.0 이상 최신버전 권장

나. 직원용 입력프로그램

1) 건설경기동향조사 입력 시스템 접속

○ 웹사이트 주소창에 "http://esaup.nso.go.kr/bdong/" 을 입력하면 [그림 1]과 같이 ActiveX 컨트롤 설치 메시지가 나타남



[그림 1] ActiveX 컨트롤 설치

○ ActiveX 컨트롤 설치를 클릭하면 [그림 2]와 같이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확인메시지가 표시됨





[그림 2]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확인

○ [그림 2]에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그림 3]과 같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설치



[그림 3] 프로그램 다운로드

- 프로그램설치가 종료되면 로그인페이지로 자동 이동합니다.
- 설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ID입력부분 바로 밑에 있는 ☞ 주동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

2) 로그인

가) 화면 기능

○ 입력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 과정

나) 화면 구성



[그림 4] 로그인 페이지

다) 화면 설명

- 발급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시스템에 접근
- 입력요령 설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음

라) 기능 설명

ㅇ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에 접속

3) 명부관리

가) 명부조회 및 수정

-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지방청총괄자, 사무소총괄자, 조사담당자
- 화면 기능
 - 조사 명부 자료를 조회 및 수정
- 화면 구성



[그림 5] 명부조회 및 수정

○ 화면설명

- 명부 검색조건 입력란과 명부 검색조건으로 조회된 검색 값을 출력하는 기업체 리스트 존재

○ 버튼의 기능

- 걸색 : 조회 조건에 따라 기업체리스트를 검색

- ☑ 엑셀 : 조회된 기업체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출력

- 전출 관할전출 : 선택한 기업체 전출처리

- 대체 : 선택한 기업체 대체

- _ 수정 : 선택한 기업체 명부수정

나) 명부수정

- ㅇ 이용가능
 - 본청청담당자, 지방청총괄자, 사무소총괄자
 - 일부기능 : 조사담당자(응답자명, 응답부서,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 화면 구성



[그림 6] 기업체 명부수정

○ 화면 설명

- 조사표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기업체의 정보를 추가, 삭제, 수정
 - ① 변동요청 : 대상 기업체가 폐업하였을 경우 폐업을 선택하면 유코코드 12로 자동입력
 - ② 인터넷조사여부: 조사대상업체가 CASI조사를 희망하면 "허용"을 선택
 - ③ 응답구분 : 본사에서 조사하면 "1. 본사", 본사외지역에서 조사하면 "2. 본사외"를 선택.
 - 본사는 응답지역 자동저장, 본사외는 직접입력
 - 응답자, 응답부서, 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응답구분을 선택한 후 입력가능

○ 버튼의 기능

- ^{수정} : 선택한 기업체 명부수정

- 취소 : 기업체 명부보완작업을 취소함

- 닫기 : 해당 작업 마침

다) 명부분배

- ㅇ 이용가능
 - 본청청담당자, 지방청총괄자, 사무소총괄자

○ 화면 기능

- 총괄자가 조사담당자에게 기업체를 배정

○ 화면 구성



[그림 7] 조사담당자별 기업체 명부분배

○ 화면 설명

- 명부 검색조건 입력란과 명부 검색조건으로 조회된 검색 값을 출력하는 기업체 리스트와 조사담당자리스트가 있습니다.

○ 버튼의 기능

- 걸색 : 조회 조건에 따라 기업체리스트 검색

- ☑ 엑셀 : 조회된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출력

- 선택/해제 : 선택한 번호의 기업체를 선택 또는 해제

- 전체선택/해제 : 전체 기업체를 선택 또는 해제

- <u>배 정</u> : 선택한 기업체를 조사담당자에게 업무 배정

- 배정해제 : 선택한 기업체 배정해제

- 적용 : 현재 수정한 내용 적용

라) 명부이력관리

-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 화면 기능
 - 명부이력 확인화면
- 화면 구성



[그림 8] 기업체별 명부이력관리

- 화면 설명
 - 기업체정보 검색조건 입력란과 기업체 검색조건으로 조회된 검색 값을 출력하는 기업체리스트 존재
- 버튼의 기능
 - 검색 : 조회 조건에 따라 기업체리스트 검색
 - ☑ 엑셀 : 조회된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출력

마) 대체기업체조회

-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지방청총괄자, 사무소총괄자
- 화면 기능
 - 표본기업체 유고발생시 대체기업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
- 화면 구성



[그림 9] 대체기업체조회

○ 화면 설명

- 기업체정보 검색조건 입력란과 기업체 검색조건으로 조회된 검색 값을 출력하는 기업체리스트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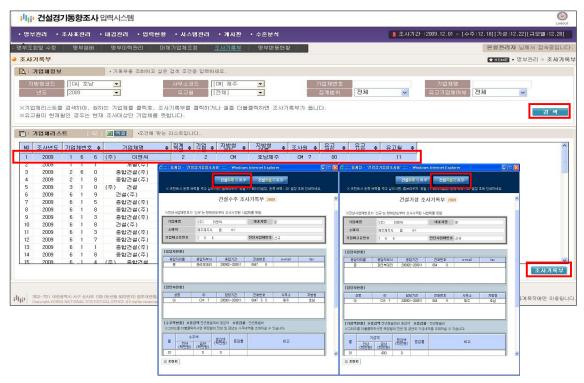
○ 버튼의 기능

- 김색 : 조회 조건에 따라 대체기업체 리스트를 검색

- ☑ 엑셀 : 조회된 대체기업체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출력

바) 조사기록부

-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지방청총괄자, 사무소총괄자, 조사담당자
- 화면 기능
 - 금월 조사대상기업체의 건설수주 및 기성의 조사기록부를 확인 및 출력
- 화면 구성



[그림 10] 조사기록부

○ 화면 설명

- 금월 조사대상기업체의 조사기록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버튼의 기능

- 검색 : 조회 조건에 따라 기업체 리스트를 검색

- 조사기록부 : 선택한 기업체의 조사기록부를 화면에 출력

- ☑ 엑셀 : 조회된 기업체리스트 자료를 엑셀 파일로 출력가능

- 글프린트 : 조사기록부 각 화면의 내용을 프린트로 출력

사) 명부변동현황

-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지방청총괄자, 사무소총괄자, 조사담당자
- 화면 기능
 - 월별 조사대상기업체의 명부변동현황을 확인
- 화면 구성



[그림 11] 월별 기업체변동현황

○ 화면 설명

- 월별 조사대상기업체의 명부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버튼의 기능
 - ☑ 엑셀 : 조회된 사무소별 명부변동내역을 엑셀 파일로 출력

4) 조사표관리

가) 조사표 입력

-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지방청총괄자, 사무소총괄자, 조사담당자

(1) 화면

- 화면 기능
 - 조사표 조회 및 수정 가능
- 화면 구성



[그림 12] 조사표 입력 기업체 리스트

- 화면 설명
 - 입력할 기업체를 클릭하면 해당 기업체의 수주/기성 조사표가 나타남
- 조사표 입력시 주의사항
 - 조사표 입력시 공사명을 입력하고 옆 칸으로 이동시 반드시 Tab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칸을 선택
- 버튼의 기능
 - ☑ 엑셀 : 조회된 리스트 내용을 엑셀 파일로 출력

(2) 건설수주조사표 입력 / 수정

○ 화면 기능

- 조사표 조회 및 입력 화면에서 특정 기업체를 선택하고 ** 수정 *** 버튼을 클릭 하면 나타나는 팝업 창

○ 화면 구성



[그림 13] 건설수주 조사표 입력창

○ 화면설명

- 조사표 내용을 입력, 수정, 추가, 삭제, 전산내검 가능

○ 버튼설명

- + 추가 : 공사수주 내용을 추가
 - 수주내역이 많을 경우 5건 입력한 후 저장을 눌러 프로그램 오류방지
- × 삭제 : 공사 수주 내용을 삭제
- │ ☑ 내역없음 │ : 공사 수주 내용이 없다면 이 버튼을 클릭
 - · '내역없음'을 클릭하면 비고란에 "수주내역없음"이 자동체크됨. 이때 비고의 사유기입란에 수주없는 사유를 기입
- X 불 응] : 금월기성내역이 입력되지 않아도 저장가능
 - · 불응을 클릭하면 비고란에 "불응"이 체크됨. 이때도 내역없음과 마찬가지로 비고에 구체적인 불응 사유를 기입

- [🚐 프린트] : 조사표 서식형태로 출력

- <mark>□ 이전자료검색</mark> : 예전 자료를 검색

• 해당기업체의 과거 수주내역 검색

- ☐ G감률계산 : 수주액의 증감률을 계산

- [₩ 총액계산] : 수주총액을 계산

- X 취 소 : 계산을 취소

- - 저 장 : 내용을 수정한 뒤에 저장버튼을 클릭해야 수정한 내용이 저장

- × 닫 기 : 팝업창을 종료

- 내검보이기 : 숨겨져 있는 내검을 화면에 표시

• 해당 기업체의 전산내검사항이 있을 경우 "내검보이기"를 클릭하면 나타남

• 이때, 오류사항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입하고, 사유저장 을 클릭



[그림 14] 내검검토 및 사유기입

- 내검 숨기기 : 내검을 숨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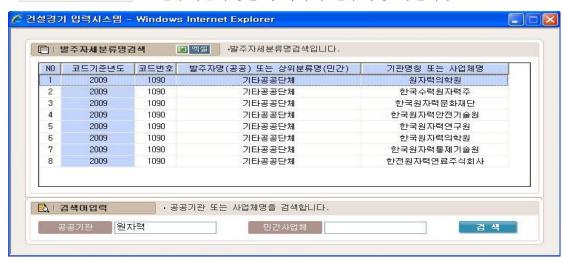
- 🖳 공종세분류명검색 : 해당 공사의 공종분류코드를 검색



[그림 15] 공종세분류명 검색

- ☑ 엑셀 : 조회된 공종세분류 리스트 내용을 엑셀 파일로 출력

- **!! 발주자세분류명검색** : 발주자분류명을 검색하여 발주자명 확인가능



[그림 16] 발주자세분류명 검색

- 🏻 엑셀 : 조회된 발주자세분류 리스트 내용을 엑셀 파일로 출력

(3) 건설기성조사표 수정

- 화면 기능
 - 조사표 조회 및 입력 화면에서 특정 기업체를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건설기성조사표 를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
 - 조사표에 조사된 기업체의 정보를 수정
- 화면 구성



[그림 17] 건설기성조사표 입력창

○ 화면설명

- 조사표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조사내용을 추가, 삭제, 수정

○ 버튼설명

- [🚐 프린트] : 기성조사표 서식형태로 출력

- │ ┗️ 이전자료검색│: 예전 자료를 검색

• 수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체에서 이전의 기성실적이 있다면 확인가능

- □ ST를계산 : 기성액의 증감률 계산

- [区 내역없음] : 건설 기성 내용이 없다면 이 버튼 클릭

· '내역없음' 을 클릭하면 비고란에 "기성내역없음"이 자동체크됨. 이때 비고 사유기입란에 기성실적이 없는 사유를 기입

- ☑ 불 응 : 해당기업체가 불응일 경우 체크

· 불응을 클릭하면 비고란에 "불응"이 체크됨. 이때도 내역없음과 마찬가지로 비고에 구체적인 불응 사유기입

- **☒ 취 소** : 계산을 취소

- 🛂 저 장 : 내용을 수정한 뒤에 저장버튼을 클릭해야 수정한 내용이 저장

- × 닫 기 : 팝업창 종료

- 🕓 수주완공예정검색 : 기업체의 완공되지 않은 수주내역을 검색하여 기성액 보완가능



[그림 18] 기업체의 수주완공예정검색 조회 결과

- ☑ 엑셀 : 조회된 완공예정별 공사수주 내역자료를 엑셀 파일로 출력

나) 조사표 출력

-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지방청총괄자, 사무소총괄자, 조사담당자
- 화면 기능
 - 조사표 조회 및 조사표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 화면 구성



[그림 19] 수주/기성 조사별 입력 결과 화면 출력

- 화면 설명
 - 조사표 조회 검색조건 입력품과 검색조건으로 조회된 검색값을 출력
- 버튼 설명
 - 조회 : 조회조건에 따라 입력된 조사결과를 화면에 출력
 - ☑ 엑셀 : 화면에 출력된 결과를 엑셀 파일로 출력
 - [TXT]: 화면에 출력된 결과를 텍스트 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

다) 원시자료 수정

-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 화면 기능
 - 원시자료 수정화면
- 화면 구성



[그림 20] 원시자료수정 화면

○ 화면 설명

- 조사표 조회 검색조건 입력폼과 검색조건으로 조회된 검색값을 출력하는 조사표 리스트와 원시자료수정항목 존재

○ 버튼 설명

- 조회 : 조회조건에 따라 조사표리스트를 출력

- ☑ 엑셀 : 조사표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출력

- 자료수정 : 원시자료에서 수정된 항목을 저장

라) 로그보기

-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 화면 기능
 - 로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화면 구성



[그림 21] 로그보기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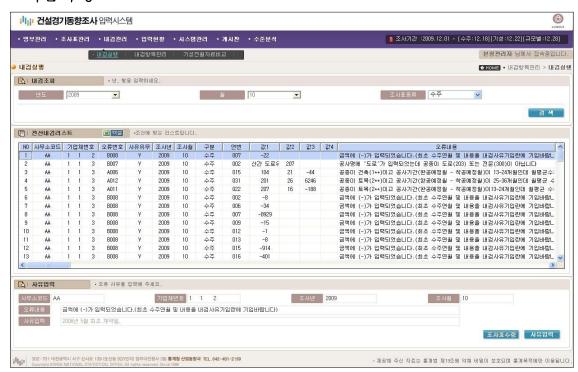
- 화면 설명
 - 로그 조회 검색조건 입력폼과 검색조건으로 조회된 검색값을 출력하는 로그리스트 존재
 - * 비고내역의 변동내역을 조회하고자 하시면 '조사표종류'에서 '비고'부분을 선택
- 버튼 설명
 - 검색 : 조회조건에 따라 변동이력내역을 출력
 - ■ 엑셀 : 조회된 로그 기록을 엑셀 파일로 출력

5) 내검관리

가) 내검실행

-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지방청총괄자, 사무소총괄자
- 화면 기능
 - 내검조회 및 전산내검 리스트를 볼 수 있으며 조사표 수정 및 사유입력

○ 화면 구성



[그림 22] 전산내검 실행 결과

○ 화면 설명

- 내검조회 검색조건 입력폼과 검색조건으로 조회된 검색값을 출력하는 전산내검 리스트와 내검을 실행하거나 사유입력 또는 조사표 수정가능

○ 버튼 설명

- '검색': 검색조건에 따라 전산내검 결과를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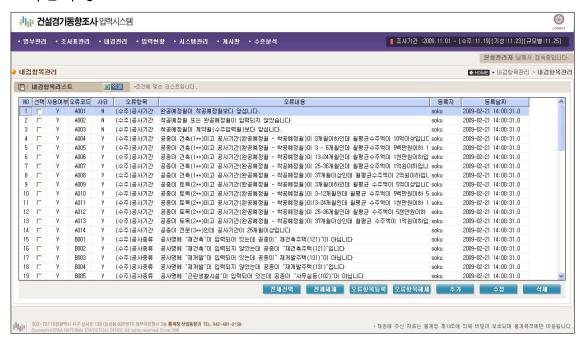
- ^{조사표수정} : 더블클릭하면 조사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조사표 화면으로 이동

- 사유입력 : 오류내용에 대한 사유 입력

- 🏿 엑셀 : 조회된 전산내검과 입력된 사유를 엑셀 파일로 출력

나) 내검항목관리

-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 화면 기능
 - 내검항목리스트 확인 및 보완
- 화면 구성



[그림 23] 전산내검 항목리스트

○ 화면 설명

- 내검항목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내검사항을 추가, 삭제, 보완 가능

○ 버튼 설명

- 전체선택 : 전체항목을 선택

- 전체해제 : 모든 항목의 선택 해제

- 오류항목등록 : 신규 오류항목을 등록

- 추가 : 신규 내걲항목을 추가

- ^{수정}: 선택한 내검항목 수정

- 작제 : 선택한 내검항목 삭제

- 🌌 엑셀 : 조회된 내걲항목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출력

다) 기성 전월자료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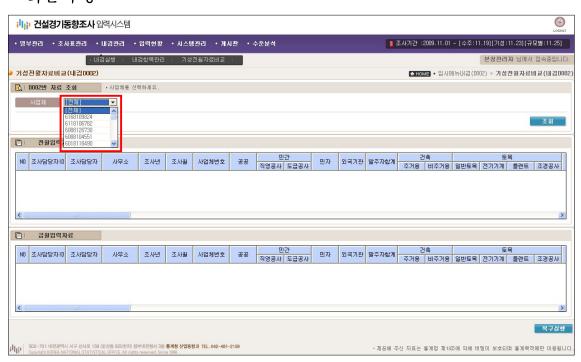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지방청총괄자, 사무소총괄자

○ 화면 기능

- 금월 입력한 전월기성액과 전월 입력한 기성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의 화면을 보여줌 (내검항목 D002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는 화면)

○ 화면 구성



[그림 24] 기성 전월자료비교

○ 화면 설명

- 기성의 전월입력자료와 금월입력자료를 보여줌
- 상단의 기업체 콤보박스를 클릭하시면 입력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기업체 리스트가 보임

○ 버튼 설명

- 조회 : 조회조건에 따라 조사표리스트를 출력

- 복구실행 : (본청권한) 전월에 입력한 자료로 기성액을 복구

6) 입력현황

가) 지방청/사무소 현황

-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지방청총괄자, 사무소총괄자
- ㅇ 화면 기능
 - 지방청(사무소)별 조사표 입력현황을 조회

ㅇ 화면 구성



[그림 25] 지방청(사무소) 입력현황 조회 결과

ㅇ 화면 설명

- 입력기간 구분에 따른 사무소 리스트와 조사표 입력현황 조회
 - ① 수주, 기성, 규모별로 구분하여 확인가능
 - ② 해당 지방청, 사무소별 자료 확인가능
 - ③ 미입력현황을 클릭하면 미입력 업체 확인가능

ㅇ 버튼 설명

- ☑ 엑셀 : 조회된 지방청(사무소) 입력현황 결과를 엑셀 파일로 출력

나) 조사원별 현황

-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지방청총괄자, 사무소총괄자
- ㅇ 화면 기능
 - 조사원별 조사표 입력현황을 조회
- ㅇ 화면 구성



[그림 26] 조사원별 입력현황 조회 결과

- ㅇ 화면 설명
 - 입력기간 구분에 따른 사무소 리스트와 조사표 입력현황 조회
- ㅇ 버튼 설명
 - ☑ 엑셀 : 조회된 조사원별 입력현황 결과를 엑셀 파일로 출력

7) 시스템관리

가) 사용자조회 및 생성

-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지방청총괄자
- ㅇ 화면 기능
 - 사용자를 조회 하거나 생성할 수 있으며 조직도별 사용자 리스트 확인가능

ㅇ 화면 구성



[그림 27] 지방청/사무소 조사담당자 관리

ㅇ 화면 설명

- 통계청 조직도와 조직도별 사용자 리스트와 사용자 정보를 추가 삭제할 수 있는 사용자 정보 확인

ㅇ 버튼 설명

- ☑ 엑셀 : 조사표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출력

- 검색 : 사용자명 검색

- 중복체크 : 사용가능한 ID 중복체크

- 추가 : 새로운 사용자 추가

- 사용중지 : 선택한 사용자의 권한을 중지시킴

- 사용 : 사용중지된 사용자의 권한을 복구시킴

- 저장 : 수정한 내용 저장

- ^{취소} : 수정 취소

나) 조사마감관리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지방청총괄자

ㅇ 화면 기능

- 각 지방사무소별 사용자들의 리스트와 마감날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조사마감 일정을 조정하는 기능

ㅇ 화면 구성



[그림 28] 조사 입력마감 관리

ㅇ 화면 설명

- 통계청 조직도와 조직도별 사용자 리스트와 조사담당자별로 마감관리
- 사용자별 마감변경시 사용자를 클릭한 후 마감조정이 필요한 사용자를 선택 한 후 사용자별 마감일정 조정

ㅇ 버튼 설명

- ☑ 엑셀 : 조사담당자별 입력마감 일정을 엑셀 파일로 출력

- 전체선택/해제 : 각 항목을 전체 선택하거나 해제

- 적용 : 마감내용을 적용

·지방청 관리자용 마감 적용 버튼 : 개별 일정조정시 사용

· 본청용 전체 사용자의 마감 적용 버튼 : 전체 마감일정 조정시에만 사용

- 백업실행 : 마감이후 마감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실행(본청권한)

다) 인터넷조사마감관리

- 이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지방청총괄자

ㅇ 화면 기능

- 각 지방사무소별 인터넷입력기업체의(CASI 조사대상업체) 마감일정을 조정

ㅇ 화면 구성



[그림 29] 인터넷조사 입력마감 관리

ㅇ 화면 설명

- 각 지방사무소별 인터넷입력기업체의(CASI 조사대상업체) 마감일정을 조정하여 CASI 입력내용을 조기마감 가능
- 비밀번호를 분실한 초기기업체에 대하여 '비밀번호'를 초기화가능
 - 초기화된 비밀번호는 기업체고유번호와 동일

ㅇ 버튼 설명

- ☑ 엑셀 : 조회된 기업체별 입력마감 기한을 엑셀 파일로 출력

- 전체선택/해제 : 각 항목을 전체 선택 또는 해제

- 비밀번호초기화 : 해당 기업체의 비밀번호를 기업체고유번호와 동일하게 초기화

라) 복구

- ㅇ 화면 기능
 - 서버와 연결이 끊긴 경우 복구 버튼을 사용
- ㅇ 화면 구성



[그림 30] 복구 화면

- ㅇ 화면 설명
 - 서버의 불안정으로 조회내역이 보이지 않을 때 사용
 - ·서버에 부하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사용자제

8) 게시판

- 가) 공지사항
 -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지방청총괄자, 사무소총괄자, 조사담당자
 - ㅇ 화면 기능
 - 본청의 공지사항 내역을 공지하고, 지방청의 의견을 게시
 - ㅇ 화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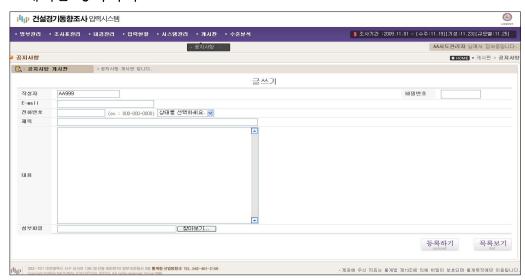
[그림 31] 공지사항 조회

ㅇ 화면 설명

- 본청이 공지한 내역과 지방청이 게시한 내역을 열람
- 지방청총괄자는 지방청별 '인터넷 공지' 가능

ㅇ 버튼 설명

- 글쓰기 : 게시내용을 쓰고자 할 때 이용
- ㅇ 게시물 등록하기



[그림 32] 게시판 글쓰기

- 글쓰기 버튼을 눌러 게시하고 싶은 내용을 등록



[그림 33] 공지사항 조회

- 게시한 내역에 대해서는 '답변' 버튼을 클릭하면 답변쓰기 가능
 -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금지

9) 수준분석

가) 건설경기수준분석

- ㅇ 이용가능
 - 본청담당자, 지방청총괄자, 사무소총괄자, 조사담당자

ㅇ 화면 기능

- 본청,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서 입력자료에 대한 수준분석을 할 수 있는 화면

ㅇ 화면 구성



[그림 34] 지방청/사무소별 수준분석 결과

ㅇ 화면 설명

- 조회권한은 해당지방청에 연결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조회가능 예) 경인지방통계청 → 서울, 인천, 경기도만 조회가능
- 공사지역, 지방청, 사무소, 기업체, 본사소재지별 집계가능
- 기업체 월별 요약표 집계가능

ㅇ 버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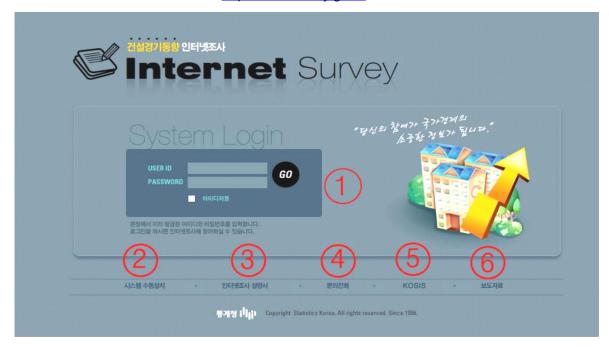
- 검색 : 수준분석 조건에 따른 검색가능

- ☑ 엑셀 : 조회된 수준분석 집계표를 엑셀 파일로 출력

다. 응답자용 입력프로그램

1) 시스템 시작

○ 주소 창에 시스템 주소인 http://icon.survey.go.kr 을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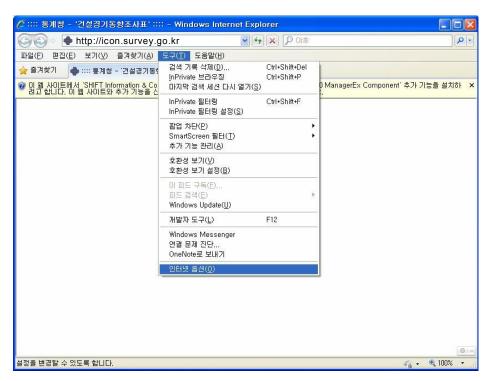


[그림 1] 시작화면

- ① 로그인 시작화면에서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⁶⁰⁰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아이디 저장을 체크하시면 기본적으로 30일간 아이디가 저장되어 다음에 로그인하실 때 편리합니다.
 - * 보안을 위하여 ID와 패스워드는 암호 형식으로 표현되며 최초 로그인 시에는 id와 비밀번호가 기업체고유번호로 지정됩니다.
- ② 시스템 자동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③ 인터넷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이용설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④ 문의할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 ⑤ 국가통계포털(KOSIS) 사이트로 링크합니다.
- ⑥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보도자료(건설경기동향 보도자료 포함) 사이트로 링크합니다.

2) 신뢰할수 있는 사이트 등록

① 메뉴에서 도구 →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림 2] 인터넷 옵션 변경

- ②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사이트 클릭합니다.
- ③ 영역에 웹 사이트 추가 입력란에 "http://icon.survey.go.kr" 입력하고, 추가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3]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등록

3) 비밀번호변경

① 최초 로그인 시에는 통계청에서 기업체고유번호로 초기화하여 부여한 비밀번호를 응답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림 4] 비밀번호 변경

- ② 로그인 후에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
 - 조사표 하단의 '암호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비밀번호 변경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림 5] 비밀번호 수시 변경

4) 건설수주동향조사표

가) 화면구성

○ [그림 1]에서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메인 화면에서 원하는 시스템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시스템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수주의 자료만 있는 경우와 수주, 기성자료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 6] 메인 화면

① 자료의 수정 또는 삽입 시에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스 저장 을 누르시면 저장 여부를 묻고 화면의 모든 수정, 추가 내용이 저장됩니다.



[그림 7] 조사표 입력자료 저장

- ③ 기업체고유번호, 조사구 번호,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지방통계청명은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 ④ 기업체 명, 응답부서, 응답자, 소재지 또한 자동 출력 됩니다. ※ ③,④ 항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조사표 입력



[그림 8] 금월 자료 입력

- 자료를 '입력'하실 때에는 [입력]옆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줄이 하나 더 생성됩니다. 생성된 줄에 입력사항을 넣으시면 내용이 입력됩니다. 추가 버튼 을 누를 때 마다 1줄씩 생겨납니다.
- 자료를 '삭제'하실 때에는 그림5의 네모 칸의 삭제할 행을 체크하시고 <u>- 삭제</u> 아이콘을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림 9] 입력자료 삭제

- ① 공종세 분류명, 발주자세분류명, 공사지역은 스크롤 바를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공사 명, 발주자명, 수주 액, 착 완공예정은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직접입력 하시면 됩니다.
- ② 비고 사항은 전월 대비 수주실적이 30%이상 증감한 경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안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였을 때에는 오류메시지가 출력됩니다.



[그림 10] 중감률에 따른 비고사항 입력 안내창

- 입력이 덜된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그림 11] 미입력된 항목 안내창

③ ===== 버튼을 누르시면 프린터 선택화면이 뜹니다.



[그림 12] 조사표 출력시 프린터 선택

※용지를 가로로 설정하셔야 조사표가 용지에 맞게 출력됩니다.(A4용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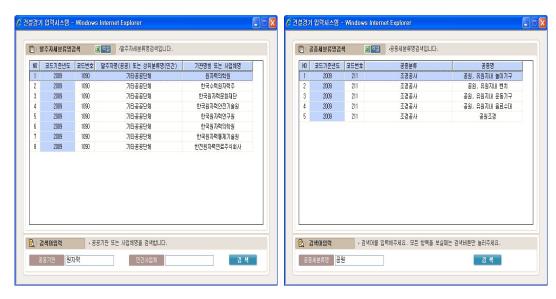
④ 이전자료검색 해당사업체의 이전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기간을 입력하는 팝업창이 뜹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연도와 월을 입력하시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과거수주내역이 조회됩니다. 조회결과는 목에 비튼을 이용하여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 이전월 수주실적 조회

⑤ S감률계산 증감률은 전월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출력됩니다. 전월 자료가 있는 경우 수주 액 총액에 대한 증감률을 표시하여 줍니다.

- ⑥ ♥ 총액계산 총액계산은 금월 입력한 수주 액 총액의 합계를 표시하여 줍니다.
- ⑦ [공종 세 분류 명 및 부호] 와 [발주자 세 분류명 및 부호]에 관한 참고자료는 조사표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프린트 하실 때 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⑧ ☑ 내역없음 공사 수주 내용이 없다면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14] 공종분류 및 발주자분류 검색 기능

다) 상단메뉴이동

○ 건설수주통계조사표와 건설기성통계조사표를 이동할 때에는 상단의 메뉴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이동할 때에는 자료의 저장여부를 물어봅니다.

6) 건설기성동향조사표

가) 화면구성

○ 건설기성통계조사표는 전월과 당월이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월의 자료는 수 정이 가능합니다.



[그림 16] 건설기성 조사표 입력창

① 자료의 수정 또는 삽입 시에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Land 을 누르시면 저장 여부를 묻고 화면의 모든 수정, 추가 내용이 저장됩니다.



[그림 17] 저장 여부

- 입력금액이 불일치 할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림 18] 합계 오류 안내창

- ② 시스템 종료 시에는 보안 및 시스템 안전을 위하여 로그아웃을 하여 종료하도록 합니다. 로그아웃은 × 닫기 버튼 또는 윈도우 우측 상단의 ×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③ 조사표의 합계부분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수정이나 삭제는 할 수 없습니다.
- ④ 내역이 없을 경우 체크합니다.



[그림 19] 기성 하단메뉴

- ⑤ 전월의 발주자, 공사종류 합계 대비 당월 증감률을 표시하여 줍니다.
- ⑥ 비고사항입력입니다. 비고사항은 전월 대비 기성실적이 30%이상 증감한 경우에 주요사유 및 현장변동 등의 주요사항을 기입할 때 사용합니다. 기성 액의 증감률이 30%이상 생겼는데 비고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저장을 하시면 [그림 20]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그림 20] 증감률에 따른 비고사항 입력 안내창

※ 프린트와 이전자료검색은 건설수주통계조사표 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담당지방청 및 사무소 공지사항 확인

가) 화면구성

- 통계청 및 지방청의 공지사항 소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 (주)○○건설, 담당사무소 : 인천사무소

인천사무소에서 인터넷 공지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1] 조사표 하단

○ 조사표창 하단 [그림 21]의 → SN사항 버튼을 클릭하면, 공지사항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그림 22] 공지사항 팝업창

○ 열람하고 싶은 공지사항을 더블클릭하면 공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8) 지방청 보도자료 링크

가) 화면구성

○ 담당 지방청의 건설경기동향조사관련 보도자료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림 23] 조사표 하단 '클릭! 지역보도자료'

○ 담당 지방청이 호남지방청인 기업체의 경우 관할 지방청인 '호남지방통계청'의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링크창 열림



[그림 24] 지역보도자료 링크



부 록

1. 조사항목 및 지침서 주요 개정내용	117
2. 조사대상기업체 변동보고서 양식	126
3. 주요 사례별 처리방법	127
4. 조사용어 해설	140
5. 조사표(견본) 가. 건설수주조사표 나. 건설기성조사표	142
6. 통계청 작성 통계현황	144
7. 통계작성 법적 근거 현황	145

1. 조사항목 및 지침서 주요 개정내용

○ 2010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조사항목		○ 조사표 항목 신설 · '조사방법' 항목 추가 1.면접 2.전화 3.Fax 4.우편(E-mail) 5.CASI · '잠/확정' 자료 여부를 조사표에 명기 ☞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장 7조 3항
○ 건설수주	○ 전문공사(300) · 자산증식에 해당되지 않는 보수공사 · 건물내 배관공사 · 구조강 건립(철골조 건설, 철근, 판금, 금속제 샤시, 비상계단공사 등), 번지 점프장, 분수대 등 · 방수, 방습, 내화 · 재해복구, 옹벽보수 · 성, 석탑의 소규모 보수공사 ·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업, 단청공사,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 기타(유리, 굴정, 해체, 열절연, 집진 장치, 비계, 창호, 칸막이, 천장공사, 재해복구, 옹벽공사 등)	 ○ 전문공사(300) 공종분류 항목삭제 □ 주된 공사의 공종에 포함하여 분류함 재분류) · 분수대: '조경공사(211)' · 산성, 성곽, 능: '기타토목(219)' · 석탑: '기타건축(109)' · 집진장치, 오염방지공사: '기계설치 (210)'
○ 건설기성	○ 기타 ・ 전문공사(301) ・ 자산증식에 해당되지 않는 보수공사	○ 공종분류 항목삭제 □ 주된 공사의 공종에 포함하여 분류 ○ 하도급 조사여부를 지침서에 명시 ・ 수주 및 기성조사에서는 하도급 받은 공사실적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치침추가) □ 건설수주의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조사제외 지침이 있으나, 건설기성은 별도명확한 지침이 없어 조사혼란 야기

○ 2009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조사항목		 ○ 미공표항목 정비 시행계획 ・ 기획재정담당관-2289호(2008.6.16.) ・ 창의혁신담당관-1792호(2008.9.3.) ○ 통계변경 승인 ・ 통계협력과-96호(2009.9.12.)
	○ 수주액 중 계약금액 ○ 발주자공급원자재비	○ 총수주액만 조사 ·세부항목 조사중지
	○ 도급구분	○ 조사중지
○ 건설수주	 발주자분류 공공 민간 - 제조업, 비제조업 민간 - 내국, 외국기업체 국내외국기관 민자유치사업 	○ 통합분류 · 공공 · 민간 - 제조업, 비제조업 · 외국기업체부분 항목분류 중지 · 국내외국기관 · 민자유치사업
	○ 통합조사 · '토지조성 및 공원(208)'	○ 항목분리 ・ '토지조성(208)' ・ '조경공사(211)'
○ 건설기성	○ 발주자의 당월공사현장수 ○ 공사종류의 당월공사현장수	○ 조사중지
	○ 공사현장별 건설기성조사	○ 2008년 10월분부터 조사중지
□ 분류지침		
○ 공종분류		
	○ '사무실, 점포, 숙박시설, 오락장, 도매 시장(102)'	☞ 전시시설의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판단, 공공목적은 (104)로 상업목적은 (102)로 분류
• 건축	- 박람회장	☞ 공공 과학관 및 전시관은(104)로 상업용 박람회장 및 전시장은 (102)로 분류(예 : 무역전시관)
	○ '공장, 창고(103)' - 위험물창고, 탄약창고	☞ 특정용 창고건물 건설로 보아 기타 (109)로 이동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기타건축(109)'	
• 건축	- 교정시설(교도소, 소년원, 부녀보호소 등) - 군사시설관련 건축물	□ 공공시설로 보아 학교, '관공서등 (104)'으로 이동 □ 공공시설로 보아 학교, '관공서등 (104)'으로 이동
	○ '상·하수도(206)'	
. = 7	-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오수정화, 하수처리설비공사	☞ 산업설비로 보아 '기계설치(210)'로 이동
• 토목	○ '토지조성, 공원(208)'	
	- 항목분리	☞ '토지조성(208)'과 '조경공사(211)'로 항목분리
○ 발주자분류		
	○ 공공기관의 항목분류 조정	
• 공공	-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한국(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발전(주)의 경우 민간(2**0)으로 분류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분류기준 및 현황에 근거하여 공기업(1030)또는 공공단체(1090)로 분류
	○ 항목 조사중지	
	- 외국기업체	☞ 별도분리 중지 ・ 민간에 포함하여 조사
	○ 항목분류	
الحالم	- 구산업분류에 따른 구분	☞ 신산업분류에 따른 구분
• 민간	○ '부동산 및 임대업(2230)'	
	- 개인발주	 사업 용도에 따라 분리적용 단순 주거용의 경우 '기타(2290)' 산업활동 목적의 경우 해당산업분류 적용(2110~2290) 예) '창고업(2210)', '교육업(2220)'

○ 1999년

구 분	변경전	변 경 후
○ 발주자명칭변경		
• 공공부문의 국영기업체	- 국영기업체	☞ 공기업
○ 발주자분류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 공기업	☞ 민간
·국내 외국기관 중 외국 기업체	- 외국기관	□ 민간 - 건설기성통계조사에서는 외국기업체를 별도분류가 곤란함에 따라 민간(직영공사 또는 도급공사)으로 분류(건설수주는 별도 조사함에 유의)
· 안성축산진흥공사, 김제 개발공사, 문경도시개발 공사 등	- 공기업	□ 지방공사 구조조정으로 민영화되면 민간으로 분류 - 민영화: 안성축산진흥공사,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 청산: 김제개발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 고창화 훼생산공사, 금강도선공사 - 통폐합: 광주교통관리공사 + 광주체육시실관리 공사 ⇒ 광주시설관리공단 - 민간위탁: 지방공사 이천, 마산, 군산의료원 - 인가취소: 광주종합개발공사
·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	- 기타공공단체	□ 경제사업부문, 지도관리부문은 기타공공단체로 분류하고, 신용사업부문은 민간으로 조사
○ 공종별분류		
· 경기장, 운동장	- 일반토목	☞ 건축의 '비주거용(102)'으로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97.9)에 의해 건축으로 분류

○ 1997년

발 주 자	변 경 전	변 경 후
○ 발주자분류	[발주자분류는 한국표준신	업 분류를 참조하여 보완]
·정부출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 국영기업체	☞ 민간
·제3섹터(민관공동 출자)		□ 공공과 민간의 출자비중으로 민간과 공공으로 분류(공공비중이 50%이상인 것은 공공으로 분류)
• 기타공공단체		□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을 나누어 정비보완 * 지침서 상의 단체는 예시적으로 나열하였 으므로 예시되지 않은 단체는 "공무원연 금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지방공사 의료원	- 기타공공단체	☞ 지방공기업 분류상으로는 국영기업체로 분류
· 한국고속철도건설 공단	- 국영기업체	☞ 기타공공단체
· 재개발조합	- 기타 비제조업	☞ 부동산업
• 광업	- 광업	☞ 기타 비제조업
· 운수창고업	- 운수·창고업	□ 운수·창고·통신업
• 민자유치사업	- 건설업, 상업, 기타공공 단체 등	☞ 민자유치사업을 기존발주자분류부호 뒤에 1을 추가하여 별도 집계

0 1993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분류추가							
• 공종분류	- 야적장 포장	☞ 203 도로 교량					
. 0.0 £ H	- 재해복구, 옹벽보수공사 등	☞ 300 전문공사					
	- 고속전철관리공단	☞ 103 국영기업체					
• 발주자분류	- 한국통신기술(주), 한국전력보수(주), 한국중공업	☞ 103 국영기업체					
○ 설명추가							
	- 부동산업의 내용설명 추가						
	- 조사표 입력 및 전송시 주의사항 추	- 가					
○ 내용교체							
	- 주요착오사항 내용교체						
• 조사대상	- 도급한도액순위 170개 기업체	□ 기성액 실적순위 250개(경상:200, 병행:50) 기업체					

0 199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조사중지	- 해외건설수주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조사중지				
○ 분류변경						
・공종분류	- 105 기타건축	☞ 109 기타건축				
• ० उसम	- 211 기타토목	☞ 219. 기타토목				
	- 104 기타공공단체	☞ 109 기타공공단체				
· 발주자분류	- 216 기타제조업	☞ 219 기타제조업				
	- 225 기타비제조업	☞ 229 기타비제조업				
○ 분류이동	[건설업체에서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사무	- -실을 직접 건설할 경우]				
· 발주자분류	- 223 부동산업	☞ 225 건설업				
○ 분류추가						
	- 225 기타비제조업	☞ 225 건설업				
		□ 229 기타비제조업(농림어업, 수산업,				
		전기·가스, 수도업)				

○ 조사방법 추가

-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분류기준
 - 건설업체가 자기사옥과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아파트) 및 기타건물(사무실)을 직접 건설하여 일반 및 산업사용자에게 분양 또는 판매목적으로 건축할 경우 발주자분류는 건설업(225)
 - 개인 또는 제조업체 등에서 분양 또는 판매목적으로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아파트 및 사무실 등을 건설할 경우 발주자 분류는 부동산업(223)
 - 건설업체, 제조업체 등에서 임대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및 사무실의 경우 발주자 분류는 부동산업(223)
- ·장기계속공사는 총액부기금액(계약총액)을 조사한다.
- 장기계속공사라 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1조 2의 규정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과 계약체결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공사의 조사방법

- 장기계속공사라 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1조2의 규정(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하여야 한다)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과 계약체결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공사는 총액부기금액(계약총액)과 당해년도 계약금액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총액부기금액(계약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0 199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		
• P9	- (2)학교의 체육관, 동물사육장 등의 공사는 주건물(학교)에 따라 분류한다.	(2)학교의 운동장(테니스, 야구장등)의 공사는 주건물(학교)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경기장 으로 분류한다.
• P15	- ○○학교 체육관(야구장 등) '208(경기장)' → '104(학교)'	☞ ○○학교 테니스 및 야구장 등 104(학교) → 208(경기장)
· P16	- 한국중공업 '103(국영기업체)' → '215(기계·장치)'	☞ 한국중공업 '215(기계·장치)' → '103(국영기업체)'
○ 신설		
· p14		☞ (6)공사지역명 및 공사지역부호
· p15		☞ 도로유관 관로공사 203.도로 → 207. 전화공사
· p17~18		☞ 조사착오사례
○ 예시보완		
	[발주자분류 해설 중 국영기업체의 예시보	· 완]
· p19~21	- 국영기업체 중 민영화된 업체 - 국영기업체의 상호변경 업체 - 국영기업체 → 기타공공단체 - 기타공공단체 → 국영기업체 - 국영기업체의 추가	 한국증권거래소, 영남화학, 진해화학, 한주(주), 대한중석광업 산업기지개발공사 → 한국수원공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성업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 핵연료, 남해화학, 서울 및 대구시 도시개발 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 기술개발주식회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 시설관리공단, 서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대구정신병원, 경주개발주식회사
· p24~26	[공종별 분류해설 예시추가] - 101 주택 - 102 사무실, 점포, 숙박시설, 오락장 - 103 공장, 창고 - 104 학교, 병원, 관공서 - 105 기타건축 - 202 농림, 수산 - 203 도로, 교량 - 204 항만, 공항 - 206 상, 하수도 - 207 발전, 송전, 변전, 배전시설 - 208 토지조성 - 211 기타토목	□ 사택 증·개축 □ 예식장 □ 위험물 창고 □ 사관학교, 복지회관 □ 동물원, 수족관 □ 육묘장 □ 도로터널공사, 유원지주차장 □ 항만준설공사 □ 오수정화, 하수처리설비공사 □ 전기통신선로공사 □ 농공단지조성공사 □ 낙도공사, 동굴공사, 지하주차장시설공사

○ 1989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조사방법		
· P10	- ※ 난은 기입하지 않는다.	□ 각 통계사무소에서 중앙으로 제출시 조사표 좌측상단의 "※사업체일련 번호"란에는 한자로 사업체명을, 해외건설수주내역에서 "※지역부호" 란에는 발주국부호를 각각 기입한다.
○ 신설		
· p14-15		 IV. 주요착오사례 1. 공종분류가 부정확한 경우 2. 발주자 분류가 부정확란 경우 3. 수주액 기재가 부정확한 경우
○ 조사범위보완		
· p16	- 농촌지도소 등(국립대학교 및 부속 초·중·고등학교 등)	대학교 및 부속 초·중·고등학교, 경기, 대전, 부산개방대학 등)
· p17	- 동해펄프주식회사	☞ 한국송유관주식회사
· p18	- 문예진흥원 등	☞ 문예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보훈복지공단, 예술의 전당 등
· p19	- 각종 수리업 등	☞ 각종 수리업, 현대사회연구소 등

2. 조사대상기업체 변동보고서 양식

가. 표본대상기업체 표본대체 내역

구분	지방청 코드	지방청 (사무소)	유고 연월	기업체 고유번호	기업체 명	표본 구분	대표자	응답 구분	본사 코드	본사 주소	응답지 주소	응답 부서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담당자 ID	담당자 명	입력 구분	유고 코드	비고
대체전																			
대체후																			

- ① 구분 : 조사대상 기업체를 대체할 경우 대체전, 대체후로 구분하여 기입함
- ② 대체순위: 대체후 기업체의 경우 대체명부에 있는 대체순위를 기입함(본사기준 동일 시도, 동일층, 동일그룹내)
- ③ 유고코드 : ① 대체 ② 폐업 ③ 전입 ④ 전출 ⑤ 조사관할전입 ⑥ 조사관할전출 ⑦ 기타
- ④ 비고: 대체사유 등을 기입

나. 전수대상기업체 유고내역

지방청 코드	지방청 (사무소)	유고 연월	기업체 고유번호	기업체 명	표본 구분	대표자	응답 구분	본사 코드	본사 주소	응답지 주소	응답 부서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담당자 ID	담당자 명	입력 구분	유고 코드	비고

① 유고코드 : ① 대체 ② 폐업 ③ 전입 ④ 전출 ⑤ 조사관할전입 ⑥ 조사관할전출 ⑦ 기타

다. 조사대상 기업체 전출·전입(관할변경)내역

- 반드시 해당 지방청과의 협의후 관할지역 변경함

구분	지방청 코드	지방청 (사무소)	유고 연월	기업체 고유번호	며	표본 구분	대표자	응답 구분	본사 코드	본사 주소	응답지 주소	응답 부서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담당자 ID	담당자 명	입력 구분	유고 코드	비고
전출																			
전입																			

① 구분 : 전출, 전입으로 구분

② 비고 : 기업체의 전출의 경우 전출지역 및 관할지방청, 전입의 경우 이전지역 및 관할 지방청을 기입

※ 시도를 달리한 본사이전: 표본의 경우 표본대체함

라. 불응기업체

- 매월 불응기업체 현황 보고

지방청 코드	지방청 (사무소)	유고 연월	기업체 고유번호	기업체 명	표본 구분	대표자	응답 구분	본사 코드	본사 주소	응답지 주소	응답 부서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담당자 ID	담당자 명	입력 구분	유고 코드	비고

① 비고 : 불응사유 및 불응시작연월 기입

3. 주요 사례별 처리방법

구 분	착오내용	올바른 처리방법
○ 조시대상		
- 건설업	■ 공원의 조경수 식재 및 관리를 수주 받았는데 건설업으로 조사됨	□ 도로변, 공원 등의 조경수를 관리하는 것은 사업시설관리(74)에 해당되므로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사제외
	■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수주를 받았는데 건설업으로 조사에 포함하여야하는지?	□ 오염된 토양정화는 산업분류상 환경 정화 및 복원(E-39)에 해당되므로 조사 에서 제외
◆ 구분기준	○ 건설업 제외대상 사업 -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08010 _ 광업지원서비스업 _ B) - 기름에 오염된 토양 정화 및 지하(39001 _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오염된 건물 정화, 오염된 하천이나건물이나 공단 등의 석면, 납, 도료(39009 _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역 - 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69310 _ 임대업 _ L) - 공원 및 정원조성을 위한 조경수(74300 _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역 - 냉장고, 룸에어콘 등 가정용기기의(95 _ 수리업 _ S)	수 정화 _ E) 나 해양 정화(하천이나 해양 기름띠 제거), E 및 기타 독성물질 경감 활동 업 _ E) 기계장비 임대 식재 및 유지관리활동 업 _ N)
- 휴폐업	■ 부도로 휴업중인 기업체 대체 여부	□ 부도인 경우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신청으로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 기존 방식으로 조사는 계속하고, 비고란에 사유기입 ▷ 이후 폐업인 경우 전수대상기업체는 조사중지, 표본대상기업체는 대체

구 분	착오내용	올바른 처리방법
○ 조사대상		
- 재수주	■ 착공되지 않아 기성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재개발아파트공사를 수주	☞ 건설수주 조사대상
	■ 70% 공정이 진행된 화성향남 택지 개발지구 J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권 인수를 통해 잔여공사 지분을 인수	☞ 건설수주 조사제외(건설기성은 조사)
◆ 구분기준	처리) 2. 시공이 진행된 공사의 잔여공사를 지(건설업체)가 인수한 경우 : 건설수주는 조사제외하되, 건설기(수주총액은 첫계약 시점에서 조시	지 않은 공사일 경우 소 후 새로운 건설사와 신규계약 한 것으로 내수주 또는 잔여공사 평가지분을 시공사
- 하도급	 □ ○○건설(주)로 부터 3억 4천만원에 하도급받은 파주운정 쓰레기 수송관로 설치공사를 신규수주로 착오조사 □ 주거용건축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받은 기성액을 건설경기동향조사 기성실 적 평가액으로 착오조사 	□ 하도급 받은 공사는 원도급건설업체 에서 중복 조사되어 건설경기동향조사 결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수주액과 기성액 모두에서 조사 제외
○ 조사시점		
- 계약월	■ 건설수주의 경우 낙찰 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시점에 수주로 조사 하는 예	□ 건설수주의 조사 기준시점은 최종 계약이 완료된 월이므로 현장 조사시 반드시 최종계약 완료시점 인지 재확인

구 분	착오내용	올바른 처리방법
○ 조사금액		
	■ 조사대상 기업체의 응답자가 바뀌어 과거자료까지 해당 조사월 실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조사하여 수주액이 과다 조사됨	□ 응답자가 바뀌었을 경우 조사요령을 반드시 설명하고, 회신받은 자료를 재확인하여 중복 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중앙선 배수로 및 선형보완공사의 수주금액을 <u>단위</u> <u>착오</u> 로 227,020백만원으로 조사	□ 수주금액을 천원단위로 착오 조사하였 으며 227백만원으로 조사하여야 됨 ◆ 수주액 조사단위는 백만원임
	■ 현대산업개발에서 발주한 I-SPACE 주상복합건물공사에서 토지가격을 포함한 금액으로 수주금액을 착오 조사	□ 토지가격을 제외한 계약액을 수주금액 으로 조사해야 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한강 살리기 3공구 사업' 수주금액을 조사 대상기업체의 총계약금액(15,813백만원) 으로 조사하여야 함에도 계속공사의 연간 계약분(연차계약분) 금액 100백 만원으로 착오 조사함	
	■ 건설기성액 조사시 공사금액을 받기 위한 기성실적 또는 세금계산서 금액을 취합하여 응답	□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 ◆ 응답한 건설기성실적이 특정월(명절, 분기별, 반기별, 연말)에 많아지는 경우 세금계산서 혹은 공사금액의 청구나 수취여부에 의해 기성실적을 응답한 것인지 확인 요함
	■ 지자체에서 상수도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자재는 시에서 제공하였는데 계약금액만 수주액으로 착오조사	☞ 공급받은 자재금액을 조사하여 수주액에 포함

구 분	착오내용	올바른 처리방법
○ 공종분류		
- 건축공사	■ 대덕대학에서 발주한 대덕대학기숙사 신축공사를 '학교(104)'로 착오분류	☞ '주택(111)'으로 분류
	■ 교육청에서 발주한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를 '학교(104)'로 착오 분류	☞ '주택(111)'으로 분류
	■ 군부대내 독신장교 숙소를 '관공서 (104)'로 착오분류	□ '주택(111)'으로 분류 ◈ 기숙사, 관사, 직원숙소는 '주택(111)'으로 분류
	■ 한국전력 사옥 등 공기업, 기타공공 단체의 사무실을 '관공서(104)'로 착오 분류	,
	■ 경로당을 '기타건축(109)'으로 착오 분류	□ 경로당은 공공성격이므로 '관공서 등 (104)'으로 분류
	■ 군부대 탄약창고 공사의 경우	□ 군사시설 중 건축으로 보아 '학교, 병원, 관공서 등(104)'으로 처리함 □ 일반 탄약창고의 경우에는 위험물(특수) 창고로 보아 '기타건축(109)'으로 처리함
	■ 학교 건물 내 화장실 보수공사	□ '관공서 등(104)'으로 분류 ◆ 건물 내 화장실 신축, 증축, 개축의 경우 에는 해당 건물로 분류
	■ 강변로, 학교 건물밖에 화장실을 설치 하는 경우	□ 건물외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타건축(109)'으로 분류
	■ 성당신축을 '사무실 등(102)'으로 착오 분류	□ 사찰, 교회 등 종교시설은 '기타건축 (109)'으로 분류

구 분	질의내용	검토결과
○ 공종분류		
- 건축공사	■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아파트모델 하우스공사를 '주택(111)'으로 착오 분류	☞ 가설건축물은 '기타건축(109)'으로 분류
	■ 교육청에서 발주한 운동장공사를 '토지조성(208)'으로 착오 분류	☞ '기타건축(109)'으로 분류
	■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등과 같이 '기타건축(109)'으로 분류
	■ 기아자동차 신탄진 서비스센터 신축 공사를 '공장·창고(103)'로 착오분류	

구 분	착오내용	올바른 처리방법
○ 공종분류		
- 토목공사	■ 강원도청에서 발주한 서리제 축조공사를 '기타토목(219)'으로 착오분류	☞ '치산치수(201)'로 분류
	■ 생태하천 복원공사의 분류방법은?	☞ 자연하천의 정비는 '치산치수(201)', 인공하천의 조성은 '조경(211)'
	1. 4대강 살리기 공사(한강,낙동강,영산강, 하천을 정비) : 자연하천을 정비 - 치	활용하여 남산산책로 주변에 인공수로를
	■ 제주시청에서 발주한 인공어초시설 공사를 '기타토목(219)'으로 착오분류	☞ '농림수산(202)'으로 분류
	■ 농업용수개발사업공사를 '치산치수 (201)'로 착오 분류	☞ '농림수산(202)'으로 분류
	■ 완도군에서 발주한 양식어장 정화사업 공사를 '기타토목(219)'으로 착오 분류	☞ '농림수산(202)'으로 분류
	■ 농지수로보수공사를 '치산치수(201)'로 착오분류	☞ '농림수산(202)'으로 분류
	■ 다기능어항건설공사의 경우 분류방법이 애매한데 분류기준은?	□ 공사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나 분류기준이 애매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참고하여 분류 ◆ 농림관련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산(202)', 국토해양부, 항만 공사 등에서 발주한 경우에는 대부분 '항만(204)'
	■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의 분류방법은?	□ 도로의 부대공사로 보아 '도로(203)'로 분류 ◆ 현재 인도도 도로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음

구 분	착오내용	올바른 처리방법
○ 공종분류		
- 토목공사	■ 도로변 재해위험지구 낙석산사태 위험 지구 정비	□ 도로개설 후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사방공사를 우선으로 보아 '치산치수 (201)'로 분리 □ 도로개설시 이루어지는 공사는 '도로 (203)'로 조사함
	■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공사의 분류?	☞ '도로·교량(203)'으로 분류
	○『건설업조사』의 경우 "도로공사와 개·보수, 식재, 화단조성 등)되는 공	이의 부대(인도, 인터체인지, 중앙분리대, 사"를 모두 도로관련으로 공종분류
	■ "도로 내 화단조성공사"의 경우 공종 분류의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도로·교량(203)'으로 분류
	○『건설업조사』의 경우 "도로공사와 이의 개·보수, 식재, 화단조성 등)되는 공	의 부대(인도, 보도, 인터체인지, 중앙분리대, 사"를 모두 도로관런으로 공종분류
	■ 항만배후조성공사를 '토지조성(208)' 으로 일괄처리	☞ 수주금액, 공사기간 등과 연계하여 순수 '항만공사(204)'인지, '토지공사(208)' 인지 확인
	■ 도로변 가로등, 신호등 설치의 경우	□ 도로공사의 연속인 경우에는 '도로 (203)'로 분류 □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발전 등 (207)'으로 분류
	■ 건물 내 조명시설의 경우	☞ 해당 건축물공사로 분류
	■ 전기통신공사를 토목의 '발전·송전, 옥외 전기·통신공사(207)'와 건축 공사(111~131, 102~109)로 구분하고 있는 데 정확한 구분 기준은?	□ 공사현장이 건물내이면 건축물의 공종 (111~131, 102~109), 건물외에서 이루 어지면 토목공사 '발전·송전(207)'으로 분류 ◆ 아파트 등 공동건물의 경우에는 단지 안은 건물에 포함

구 분	질의내용	검토결과
○ 공종분류		
	■ 담장허물기 공사의 경우	□ 담장내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 □ '도로변보호시설설치(203)'와 '조경 (211)'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된 비중에 따른 분류
	■ 한국통신에서 발주한 도로유관 관로 공사를 '도로·교량(203)'으로 착오 분류	☞ 통신유관관로공사는 '옥외 전기·통신 공사(207)'로 분류
	■ 호수공원 야간조명 설치공사	고 건물 외에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발전・송전(207)'으로 분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쓰레기매립 지조성공사를 '기타토목(219)'으로 착오 분류	☞ '토지조성(208)'으로 분류
	■ 포스코에서 발주한 노후기계 교체 공사를 '공장·창고(103)'로 착오 분류	☞ '기계설치(210)'로 분류
	■ 조경공사를 '토지조성(208)'으로 착오 조사	□ '조경공사(211)'로 분류 ◆ 2009년부터 토지조성에서 분리됨
	■ 조선소내 도크(암벽)공사?	☞ '기타토목(219)'으로 분류
	○ 『건설업조사』에서는 항만에 포함하 ○ 통계기준과 산업분류팀과 협의	여 조사
	■ 바다낚시를 위하여 바다에 뗏목을 설치하고, 뗏목까지 도보로 이동가능한 부도를 설치하는 해양낚시터 조성 공사의 분류는?	☞ '기타토목(219)'으로 분류

구 분	착오내용	올바른 처리방법
○ 발주자		
- 발주자명	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를 발주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부산지방청' 으로 착오 기입	☞ 발주자명에 정확한 기관명인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수정 기입
	■ 조달청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대행하여 계신제 배수로공사를 발주 하였으나 '조달청'을 발주자를 착오 기입	□ 발주자 이름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으로 수정 기입
	■ 압해도구항 방조제공사를 발주한 신안군을 '지방자치단체'로 착오기입	☞ 발주자 이름을 '신안군'으로 수정 기입
- 발주자분류	■ 용암-신산간 도로공사를 발주한 '국토 관리청경기북부출장소'를 '지방자치 단체(1020)'로 착오분류	☞ '중앙정부(1010)'로 분류
	■ 중앙소방학교실내훈련장공사를 발주한 '중앙소방학교'를 '지방자치단체'로 착오분류	☞ '중앙정부(1010)'로 분류
	■ 다목적체육관공사를 발주한 '경기도 교육청'을 '정부(1010)'로 착오분류	☞ '지방자치단체(1020)'로 분류
	■ 도봉지구3단지아파트건설공사를 발주한 '서울시도시개발공사'를 '지방 자치단체(1020)'로 착오분류	☞ '공기업(1030)'으로 분류
	● 반포로 강관 보수공사를 발주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지방자치단체 (1020)'로 착오분류	☞ '공기업(1030)'으로 분류
	■ 부산교통공사를 '기타공공단체(1090)'로 착오분류	☞ '공기업(1030)'으로 분류

구 분	질의내용	검토결과
○ 발주지분류		L
	■ 한국농어촌공사를 '공기업(1030)'으로 착오분류	☞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타공공단체 (1090)'로 분류
	■ 송도테크노파크(재)의 발주자분류	□ '기타공공단체(1090)'로 분류
	■ 공사명에 따른 농협의 발주자분류	□ 중앙회 경제사업(창고신축, 마트신축 등) 및 교육사업의 경우에는 '기타공공 단체(1090)' □ 중앙회 금융사업의 경우에는 '도소매업 등(2220)'으로 일괄분류 □ 지역농협은 '도소매업 등(2220)'으로 분류 ◆ 발주자명에 반드시 지역농협인지, 중앙회인지 반드시 기입
	■ 송도글로벌캠퍼스(주)의 발주자분류	□ '부동산업(2230)'으로 분류
	■ 리사무소(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의 분류는?	□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민간의 비제조업 부분 중 '기타(2290)'로 처리
		F사무소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 리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있음. 당 리의 주민들의 자체운영자금 확보

구 분	착오내용	올바른 처리방법
○ 발주자		
- 민자사업	■ 공사명에 "민자" 공사로 표시되었는데 발주자분류에 민자가 아님(2**0)	□ 민자의 경우에는 발주자분류에 반드시 민자로 처리(2**1)
	■ 임대형민자사업으로 학교신축공사를 수주받았는데 발주자를 '부동산업 (2231)'으로 착오분류	□ '금융·보험·서비스 민자(2221)'로 분류
	■ 민자로 고속도로건설을 하였는데 발주자분류를 '건설업(2251)'으로 착오분류	☞ '운수, 창고, 통신 민자(2211)'로 분류
◆ 구분기준	- 복합문화회관 시설을 민자로 할 경·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2221)' 으로 분류 - 국공립도서관 신축을 민자로 할 경· : 도서관, 독서실운영인 예술스포츠여 서비스업 등(2221)'으로 분류 - 상하수도관련 시설을 민자로 할 경·	민자로 할 경우 통신업(2211)'으로 분류 서비스업 등(2221)'으로 분류 서비스업 등(2221)'으로 분류 '용·보험·서비스업 등(2221)'으로 분류 우 업으로 보아 '금융·보험·서비스업 등 우 가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 '금융·보험・

구 분	질의내용 검토결과					
○ 발주자분류						
- 기부체납	■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학교를 기부체납 형식으로 건축할 경우 발주자 분류기준	□ 직접 건축해서 기부체납 : '건설업 (2250)' - 현금기부 후 지자체에서 건설할 경우는 '지자체(1020)'로 분류				
	■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의 발주자 분류	☞ '개인(2290)'으로 분류				
- P/F 사업	■ 에콘힐(주)에서 P/F 사업으로 발주한 광교신도시 광교파워센터의 공사명에 임의로 'BTL' 기입 후 발주자분류를 '부동산업/민자(2231)'로 착오분류	□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은 민간 기업에서 특정사업을 위한 자금마련 기법이며 민자사업의 범주로 볼 수 없음 - P/F사업 발주자는 '부동산업(2230)'으로 분류				
	○ P/F(Project Finacing) -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구 분	질의내용	검토결과
○ 일반사항		
- 조사개요	● 여러 건설관련 통계지표가 작성되고 있는데 건설기성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 건설투자에 관한 통계인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은 향후 건설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서 이용되고 있지만 이는 실제 건설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 □ 또한 한국은행에서 GDP작성을 위한 건설투자추계는 시의성이 떨어지며 분기별로 작성됨에 따라 매월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건설투자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건설기성조사를 개발한 것임
- 통계자료	■ 건설수주조사와 건축허가면적의 증감 변동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대상으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조사하지만 건축허가면적은 건축부문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조사함. 또한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건축허가 이후에 건설공사계약 즉 건설수주로 집계됨에 따라 양 조사간에 시차도 발생하여 조사간 변동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 표본선정	■ 대상 기업체가 매년 새로이 선정되는 이유는?	□ 모집단인 건설업조사가 연간조사로 매년 이루어 지고 있으며, 표본추출은 모집단 기업체의 자본금 및 기성액을 기준으로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구분 하여 조사함 □ 매년 기업체의 기성액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표본도 매년 변동하게 됨

4. 조사용어 해설

- 산업
- 산업활동
- 한국표준산업분류
- 기업체
- 사업체
- 유고기업체
- 건축
- 토목
- 리모델링
- 재건축주택
- 재개발주택

-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모든 생산단위의 집합
- 사회적인 분업화에 따라 "개별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ㆍ제공하는 것
- 각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각종 산업활동을 일정한 분류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할하여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별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분류를 표준화한 것
-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타 기록)를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
- 1개의 기업체는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 1개 또는 여러 개의 사업체로 구성됨
-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
- 사업체의 판단에 영리·비영리, 적법·위법 여부는 관계없음
- 조사불응, 휴업, 폐업, 소재불명, 이전, 합병, 기타(면허취소, 영업정지, 명칭변경 등)의 경우
-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 목재나 철재·토석 따위를 사용하여 땅과 하천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나 둑, 교량, 항만, 철도, 상하수도 등)을 건설하거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
- 오래된 주택 또는 기타 건물을 새로 개수(改修)하거나 보수(補修)하는 건축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 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정비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역 및 그 밖의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공급시설 등

○ 직영공사	 건설업체가 임대, 증여, 분양 또는 직접이용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인력 및 자재를 직접 조달하여 자기계정으로 시공하는 공사 모기업에서 수주 받았을 경우에는 도급 받은 것으로 분류
○ 도급공사	○ 시공사(건설업체)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시행사(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도급 공사는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공사
○ 하도급공사	○ 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건설업체)가 자신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체 공정에 대한 시공을 제3의 건설업체에게 다시 도급하는 계약을 맺고 이행하는 공사 -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수주 및 기성조사에서는 하도급 받은 공사실적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건설기성액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수취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원자 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 기성조사에서의 기성실적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도급기성을 기준으로
	하며, 도급기성이 계산되지 않는 직영공사의 경우 실행기성을 조사함
○ 실행기성	○ 실제 시공에 소요된 공사원가로 재료비, 노무비, 현장경비 등을 포함
○ 도급기성	ㅇ 계약공사의 경우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금액
	- 도급기성은 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발주자에게 관기성을 신청
○ 관기성	○ 건설업체가 공사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
○ 리모델링	오래된 주택 또는 기타 건물을 새로 개수(改修)하거나 보수(補修)하는 건축행위
○ 치산(治山)	ㅇ 산을 손질하여 잘 다스림
○ 치수(治水)	ㅇ 하천, 호수 등을 잘 다스려 범람을 막고 관개용 물의 편리를 꾀함
○ 사방(砂防)	산, 바닷가, 강가 등의 모래나 흙이 바람, 비에 씻기어 무너지거나 떠내려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하는 일

ㅇ 조수간만의 차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쌓은 둑

○ 부두 외곽에 설치하여 선박 등의 정박을 용이하게 하는 둑

○ 강철선에 운반차를 달고 사람, 물건을 운반하는 장치(케이블카, 리프트 등

○ 길, 제방 등을 고치어 닦거나 수축함

설치공사

○ 방조제(防潮堤)

○ 개수(改修)

○ 삭도(索道)

○ 방파제

5. 조사표(견본)

가. 건설수주

건설경기동향조사표[건설수주,갑]

	7	<u> </u>		1	IIU
	(2011)	7107)		응종세분류명	에 바 바 바 *
Κ	型 型			더0	*
기업체명	소재지(주소)	기업체고유번호	1	F-	50
' '	71			일단	<u>지</u> 에

사사		
(M) 영 하		
위해 실시하는		
하		
건설활동 동향분석을	10116호)입니다.	
·이 좌뉴 ઋ폐	(국가지정통계 제	

(귀룡□□

	보호되고	
	규정에 의해	부탁드립니다.
	제33조의	<u>합</u> 저매
-	동계법	적극적인
Ì	된 자료는	응답자 여러분의
· - I /	조사에서 수집된	
	이 조사	있습니다.

 α

ო

4

공사 지역 및 부호	광주: 24 강원: 32 전	대전: 25 충북: 33 경	울산: 26 충남: 34	경기: 31 전북: 35 제		
	 ЮЮ	부산: 21	ή.			

표지조성 대 대 기계설치 조경공사 기타토목

208 209 210 211 213

1 치산·치수 2 노림·수산 3 도로·교량 4 항만·공항 5 철도·체도 6 상·하수도 7 발전, 옥외 전기·통신

201 202 203 204 205 205 205

111 신규주택 121 재건축주택 131 재개발주택 102 사무실, 점포, 오락, 숙박시설 103 공장·창고 104 학교·병원, 관공서, 연구소 109 기타건축

면 접 전 화 Fax 우편(E-mail) CASI

-. 5. 6. 4. r.

매

Ш

ĸН

끿

조사방법

			호 아 아 아 아	조사담당자
ᆲᅋ	ᆙ	₹	사 바.	
광 주자	天0 •	田0	· 50	
	لکا	하	•전 화 () - () -	- (
교	× Ч Х	×	·FAX () - () -	- (
1	· E-mai	n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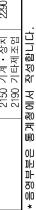
STATISTICS KOREA

	· 작		₹0 ₹0	· 전 혁	> < U	C	:
민 자	엄이 민자유	였을 경우 시	밤 등을 함	분류부호 뒤에 "1"을 추가	무,철도,항	(221)+(1)=2211	
국내 외국기관	3000 국내외국기관	(외국기업체는 민간으로 분류)					
내 민간	220 비제조업	校0	사 되다.	2230 부동산업	2250 건설업	2290 기타비제조업	
논	210 제조업	ᇎ	유 하 이	0=	+	2150 기계 · 장치	
운운 바논	1010 정부	\prec	1030 공기업	7			

[턴

ΞK

[발주자 세분류명





나. 건설기성



건설경기동향조사표(건설기성)

(201□년 □□월분)

기 업 체 명		조사
소재지(주소)		방법
-	ll 업 체 고 유 번 호	
_	-	

- ·이 조사는 국내의 건설활동 동향분석을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조사(국가지정통계 제 10116호)입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 성 액(백만원)							
발	주 자	분류부호	전		월		당	월		발 주 자 분 류 기 준
공		101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기타공공단체
n131	직영 공사	201								직영공사는 조사대상업체의 자기공사를 말하며 산하기업, 모기업이 발주한 것은 직영공사에서 제외
민간	도급 공사	202								조사업체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 산하기업, 모기업이 발주한 것은 도급공사로 분류
	민 자	301								민간이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업자 지정을 받아 행하는 모든 사업
외국기관		401								주한 외국군, 주한외국공관 * 외국기업체는 민간으로 분류함에 유의
합 계										
공 사 종 류		분류부호	기 성 액(백만원)				백만 문	릴)	공 종 분 류 기 준	
			전	!	월		당	월		00 2 7 7 2
거축	주 거 용	101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신폭	비주거용	102								사무실, 공장·창고, 관공서, 기타(경기장, 운동장, 체육관, 종교시설 등)
	일반토목	201								치산·치수, 농림·수산, 도로·교량, 항만· 공항, 철도·궤도, 상·하수도, 토지조성, 댐
토목	전기기계	202								발전·송전, 옥외 전기·통신공사
	플 랜 트	203								대규모 기계설치공사, 탱크조립공사, 제조 설비설치공사
	조경공사	204								수경시설, 녹지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등
합 계										
잠·확정 구분			□잠경	덩	□확정]잠정	□확	정	

0	비고(전월대비	기성실적이	30%이상	증감한	경두
	현장변동 등 주	요사유 기인	!)		

	응답자	조사담당자
•부 서		
ㆍ성 명		
•전 화	() –	() –
·FAX		() –
• E-mail		



^{*} 음영부분은 통계청에서 작성합니다.

6. 통계청 작성 통계현황(52종)

(2009. 12. 1. 현재)

작성방법	작성주기	통 계	명 칭
조사통계(42종)			
	5 년	● 인구총조사 ● 서비스업총조사	주택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
	2 년	• 통계인력및예산조사	
전수조사 (12종)	매 년	● 광업·제조업조사 ● 농어업법인조사	● 전국사업체조사 ● 기업활동조사
	분 기	• 전자상거래동향조사	
	매 월	• 인구동향조사	• 어류양식동향조사
	5 년	생활시간조사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 가계자산조사
표본조사 (30종)	매 년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업조사 양곡소비량조사 사교육비조사 농작물생산조사 	 사회조사 도소매업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어업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경지면적조사
	분 기	• 가축동향조사	•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매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소비자물가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기계수주동향조사 사이버쇼핑동향조사
	5 년	• 장래인구추계	• 장래가구추계
가공통계 (8종)	매 년	국가자산통계생명표	● 지역소득 ● 사망원인통계
	매 월	• 경기종합지수	• 설비투자지수
보고통계	매 년	• 국제인구이동통계	
(2종)	매 월	• 국내인구이동통계	

7. 통계작성 법적 근거 현황

가. 통계의 작성

»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 ② 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나. 비밀보호 및 벌칙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①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다. 조사응답 의무 및 과태료 관련규정

제25조 (자료제출명령)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실지조사)

- 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②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 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①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 제**41**조 (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 4.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이,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 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8.12.31>